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511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491호 2003. 6. 30.(월)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 치 법 규

[조 례]

제4419호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개정조례 5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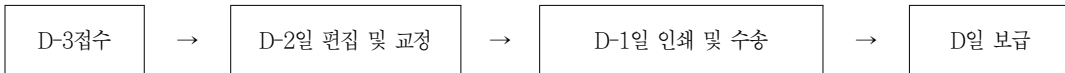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포커스(<http://www.metro.seoul.kr>
 서울뉴스→서울시보 클릭)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511
- 서울시보발간일은 5일, 10일, 15일5일주기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2부)하며, 전자문서나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평 일 14:00
 토요일 11: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규 칙]	
제3334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증개정규칙	8
◎ 고 시	
제2003-183호 목동사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변경(폐지)결정	9
제2003-184호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문배지구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	10
제2003-187호 도심재개발구역(용두구역)변경결정	18
제2003-18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예능보유자인정	19
제2003-190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20
제2003-192호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5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22
제2003-193호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4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결정	26
제2003-1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31
제2003-19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33
◎ 공 고	
제2003-765,766,771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34
제2003-772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34
제2003-773호 일반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수리	35
제2003-775호 2003도심재개발사업용자계획	41
제2003-777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다단계판매업자행정처분	44
제2003-781,786호 일반건설업등록	49
제2003-782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수리	50
제2003-793호 자동차전용도로해제	50
◎ 구 고 시	
제2003-42호 도시계획사업(문화시설)실시계획인가(중구)	51
제2003-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청사)실시계획인가(용산구)	54
제2003-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용산구)	55
제2003-5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동구)	56
제2003-3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광진구)	56
제2003-50,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북구)	59
제2003-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작성·승인(양천구) ..	61
제2003-59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강서구)	61
제2003-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구로구)	62
제2003-3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자지정(구로구)	63
제2003-47호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구로구)	64
제2003-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자지정변경(구로구)	65
제2003-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금천구)	66

제2003-37호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실시계획인가(영등포구)	66
제2003-6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동작구)	78
제2003-57호 봉천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관악구)	80
제2003-60호 봉천제4-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관악구)	81
제2003-4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실시계획(송파구)	83
제2003-50호 유료노인복지주택사업계획승인(강동구)	84

◎ 구 공 고

제2003-240호 건설업신규등록(중구)	85
제2003-242,243호 전문건설업등록(용산구)	85
제2003-243호 건설업등록(광진구)	85
제2003-330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처리(중랑구)	85
제2003-276호 건설업(전문)등록처리(강북구)	86
제2003-245호 건설업체(전문)신규등록처리(도봉구)	86
제2003-236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노원구)	86
제2003-35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공람(은평구)	86
제2003-369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공람(은평구)	91
제2003-253호 전문건설업등록처리(마포구)	93
제2003-460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구로구)	93
제2003-334호 도시관리계획공람(영등포구)	93
제2003-263,265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관악구)	94
제2003-242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처리(서초구)	97
제2003-231호 전문건설업등록(송파구)	97
제2003-184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강동구)	97
제2003-185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강동구)	98

◎ 사업소고시

제2003-100호 하천점용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100
제2003-101호 하천점용의추인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100

◎ 사업소공고

제2003-7호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용산소방서)	101
제2003-16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성동소방서)	101
제2003-22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행정처분(동대문소방서)	101
제2003-6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영등포소방서)	102
제2003-23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서초소방서)	102
제2003-24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서초소방서)	102

제2003-39호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영업정지1월)(송파소방서)	102
제2003-6호 소방시설공사업(영업정지)(강동소방서)	102
 ◎ 기 타	
제2003-121,122호 하천점용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104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119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제28조의2제5항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이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방지시설설치기준) 서울특별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중에 있는 시설은 별표 1 제2호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중에 있는 시설은 2004년 3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제2조관련)

1. 질소산화물(NO2)			
배 출 시 설	적 용 기 간 및 배 출 허 용 기 준		
	1999년 3월 20일 전에 설치된 시설		1999년 3월 20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
	2003년12월31일까지	2004년 1월1일부터	
가.기체연료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1) 발전용내연기관 (2) 기타 발전시설 (가)설비용량100MW 이상 (나)설비용량 10MW 이상 100MW 미만 (다)설비용량 10MW 미만	250(13)ppm이하	100(13)ppm이하	100(13)ppm이하
나.소각 시설(1일 처리능력이 50톤이 상인 소각시설에 한한다)	100(12)ppm이하	80(12)ppm이하	80(12)ppm이하

비고:

- 가.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 나. 질소산화물의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2. 탄화수소(THC)

배 출 시 설	배 출 허 용 기 준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1)배출가스량이 10,000m ³ /시간 이상인 시설 (2)배출가스량이 1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50ppm 이하 100ppm 이하

비고:

- 가.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기준(제3조관련)

대 상 시 설		방 지 시 설 설 치 기 준
구분(업종)	배출시설 규모	
자동차 정비시설	용적5m ³ 이상 또는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	1.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가. 활성탄 등에 의한 흡착시설 단, 흡착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흡착성능이 한계에 도달하면 흡착된 고농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탈착·회수하여 처리하는 흡착제 재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생물학적 처리시설 다. 열 또는 촉매 산화반응시설 라. 저온응축 또는 흡수시설 마.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지시설의 제거효율은 다음과 같다. 가. 배출가스량 10,000 m ³ /시간 이상 : 70%이상 나. 배출가스량 10,000 m ³ /시간 미만 : 85%이상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2002.12.26.개정)에서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허용기준과 배출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오존 발생을 저감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함.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제2조)
 - 배출가스량 10,000m³/시간 이상인 시설 : 50ppm 이하
 - 배출가스량 10,000m³/시간 미만인 시설 : 100ppm 이하

다. 자동차 도장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함.(제3조)

- 대상시설
 - 업종 : 자동차 정비시설
 - 규모 : 용적5m³이상 또는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
- 방지시설 설치 종류
 - 활성탄 등에 의한 흡착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
 - 열 또는 촉매 산화반응시설
 - 저온응축 또는 흡수시설
 - 그 밖에 상당한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방지시설 제거효율
 - 배출가스량 10,000 m³/시간 이상 : 70%이상
 - 배출가스량 10,000 m³/시간 미만 : 85%이상

라. 탄화수소(THC)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정비 도장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준은 신규시설은 조례공포일부터, 기존시설은 2004. 4. 1일부터 적용함.(부칙 및 별표1)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334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주관국란중 “환경관리실(폐기물관리과)”를 “환경국(청소과)”로 하고, 같은 란중 제2호의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거법령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재위임사무중 변경된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함(별표)

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나.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83호

**목동사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
계획시설변경(폐지)결정**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1999-67호(1999. 4.16)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중전 도시설계) 결정고시된 양천구 목동사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명칭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소매시장	삼거리시장	양천구 목동 792-4	1,554	(감)1,554	0	'82.1.19 (서고21)	공부상면적 1,521.6m ²

※ 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 면적과 공부상면적이 상이하나 시설결정당시 면적을 폐지 결정함.
[시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장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삼거리시장 (목동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 1,554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기능 상실로 개설등록이 취소 • 인근 대형마트 입점으로 시장 기능 유지 어려움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 분		변 경 내 용
부지면적	당 초	1,554m ²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채납 면적: 155.94m² (10.25%) - 폭 3m 공공보행통로 면적: 124.98m², - 폭0.6m 도로확폭 면적: 30.96m²

※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확정

2. 기타 지구단위계획 사항 : 변경없음.

- 3. 관계도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
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300)
및 양천구 도시주택과(☎ 2650-3380)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84호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문배지구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 7.11)
로 고시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지구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1. 특별계획구역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24-6외 36필지	30,959.00	-	30,959.00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가능

나.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BLOCK
별 구분

구역명	계	A BLOCK	B BLOCK	C BLOCK	비고
면적(㎡)	30,959.00	8,212.10	13,368.00	9,378.90	
사업주체	-	고려개발(주)	CJ(주)	-	

- ※ 1. C BLOCK은 현재 동양제과부지로서 금회 세부개발계획에서 제외
- 2.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가능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959.00	-	30,959.00	100.0	문배지구 특별계획 구역내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214.80		2,214.80	7.2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28,744.20	감) 19,720.80	9,023.40	29.1	
	준주거지역	-	증) 19,720.80	19,720.80	63.7	

- ※1. 일반주거지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토록 기결정된 사항임.
- 2. 2003.7.1이후 □BLOCK(일반주거지역)9,023.40m²는 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과를 적용하고 세부개발 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용산구 문배동 24-6번지 일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19,720.8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 ²)	연장 (m)	폭원 (m)	비고
기정	-	서강로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연대~공덕동~ 삼각지	110,400 (1,584)	4,600 (132)	도로양측 12	서고 2001-229호 (2001.07.11)
기정	-	백범로 지구	방화지구	원효로1가~삼각지	14,544 (1,584)	-	-	서고 2001-229호 (2001.07.11)

※ ()는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3.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750 (237)	삼각지 광장	원효로 1가	일반도로	한강로 1가	서고2001-229호 (2001.07.11)	-
기정	대로	3	-	21.4~35	주간선 도로	704 (252)	문배동 (대1-1)	한강로 2가 (대2-72)	일반 및 고가도로	문배동 한강로2가	서고2001-229호 (2001.07.11)	-
신설	중로	3	-	12	국지 도로	258	문배동 20-1	문배동 30-3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	10~12	국지 도로	177	문배동 31-2	문배동 29-2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	6	국지 도로	111	문배동 24-2	문배동 24-6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228	문배동 19-6	문배동 24-2	일반도로	-	건고560호 (1963.9.19)	-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228	문배동 19-6	문배동 24-2	일반도로	-	건고560호 (1963.9.19)	-

※ ()는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중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일반도로 •B=12m / L=25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신설
신설	-	중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일반도로 •B=12m / L=177m 	"
신설	-	소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보행자전용도로 •B=6m / L=111m 	"
폐지	소로 3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 일반도로 •B=6m / L=22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나. 도시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용산구 문배동 24-1일대	-	증)842.5	842.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면적 : 842.5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신설

4.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A b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건축 권장 - 권장규모 : 5,000m² ~13,0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대지로 공동개발 - 획지면적 : 6,030.2m² 	고려개발 사업부지
B b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건축 권장 - 권장규모 : 5,000m² ~13,0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대지로 공동개발 - 획지면적 : 8,727.5m² 	CJ 사업부지
C b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건축 권장 - 권장규모 : 5,000m² ~13,000m² 	-	동양제과부지

- ※ 1. A·B block의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가능
- 2. C block의 면적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시 수립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세부개발계획		
용 도	<불허용도> • 해당없음		
	<권장용도> • 주거시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복합된 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중 전기·전자 관련 상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구 분	2003.6.30 까지	2003.7.1부터
	기준용적률	300%	300%
	허용용적률	400% 이하	360% 이하
	상한용적률	• 기부채납율에 따른 산식에 의함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높이제한	• 100m 이하(절대높이 적용)		
공공시설 제공비율	Block 구 분	공공시설용지 부담율	비 고
	A	21.56%	• 도로조성
	B	21.56%	• 도로 및 공원조성
	C	-	• 도로 및 공원조성

- 주) 1. C BLOCK의 세부개발계획은 추후 수립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지상부 건물전체용도면적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3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3. 권장용도가 지하층에 적용된 경우도 당해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지상연면적대비 당해 수용 권장용도의 면적을 적용하여 본 지침에 의거하여 기준용적률의 완화를 받는다.
 4. 공공시설 제공비율은 추후 건축인·허가 협의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용적률 산정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항 목		내 용	완화용적률 내용 및 산식		용적률완화(%)	
					A block	B block
대 지	공동건축 권장	공동건축 이행시	기준용적률×0.2	300%×0.2 = 60.00%	300%×0.2 = 60.00%	
대지내 공 지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	공개공지 추가 조성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300×(310.5÷ 6,030.2) = 15.45%	300×(449.5÷ 8,727.5) = 15.45%	
	공개공지형 쌈지공원	쌈지공원 조성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1.2	300×(422.2÷ 6,030.2)×1.2 = 25.20%	300×(611.0÷ 8,727.5)×1.2 = 25.20%	
형태 및 외관	탑상형	탑상형 건축물 건축시	기준용적률×0.2	300%×0.2 = 60.00%	300%×0.2 = 60.00%	
환경친화	투수성 바다처리	투수성 바다처리	-	미적용	미적용	
건축물 형태/ 외관	야간경관 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	미적용	미적용	
	건폐율 강화	블록별 건폐율 35% 이하	A block : 29.9% B block : 29.3%	미적용	미적용	
합 계				160.65%	160.65%	
허용용적률 결정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400%이하 적용 • 허용용적률 : 300% + 160.65% = 460.65% ≥ 400% 적용				

나. 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출결과	산 출 내 역	비 고
A block	기부 채납율 21.56%	□기부채납율(a) : 기부채납면적 / 기부채납전 대지면적 = 1,657.6㎡ / (1,657.6㎡ + 6,030.2㎡) = 0.2156	※보행자전용도로는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상한 용적률 542.9%	□상한용적률 : [((1+0.3a)/(1-a)) × 허용용적률] = [((1+0.3×0.2156)/(1-0.2156))×400.00%] = 542.9%	
B block	기부 채납율 21.56%	□기부채납율(a) : 기부채납면적 / 기부채납전 대지면적 = 2,398.9㎡ / (2,398.8㎡ + 8,727.5㎡) = 0.2156	※보행자전용도로는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상한 용적률 542.9%	□상한용적률 : [((1+0.3a)/(1-a)) × 허용용적률] = [((1+0.3×0.2156)/(1-0.2156))×400.00%] = 542.9%	
상한용적률 결정		□ 상한용적률 : [((1+0.3a)/(1-a)) × 허용용적률(400%)] = 542.9% > 540.00%적용	

7. 건축물의 높이계획
 ■ 높이제한 적용기준

구 분	세부개발계획(안)
건축물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 100m •최저높이 : -

※ 본 계획 대상지는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정비유도지역에 속하며,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절대높이를 적용

②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외관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범로변 3m •남측 이면도로변 3m 	
건축물 외벽면 처리	통일성	• 외벽면 주변건물과 조화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없는 벽면 노출하지 않음 •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설치 않음 • 간선변 인쪽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투시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관련 심의위원회와 협의) • 투시형 서터를 사용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건축물 전면부 입면처리	외벽면 재료	• 재료는 조화를 이루도록 함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설치 • 개구부 조화를 이루도록 함 	
	조 명	• 외부조명 설치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음. (옥외 광고물 설치시 관련 심의위원회 협의후 설치) 	

2. 교통처리계획

구 분	세부개발계획(안)	비 고
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남측 구역경계에 도로 신설(폭 12m) •대상지 중앙 A 블럭과 B블럭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폭 6m) •추후 B 블럭과 C 블럭 사이에 도로 지정 (폭 10~12m)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가로변, 각각부 및 공개공지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각 Block별로 이면도로에서 차량진출입구간 지정 	

주)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동선계획·기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등은 추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초계획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개공지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 조성 - A block ·조성 - 612.0㎡ ·의무 - 301.5㎡(대지면적의 5%이상) ·초과 - 310.5㎡ - B block ·조성 - 1,060.4㎡ ·의무 - 610.9㎡(대지면적의 7%이상) ·초과 - 449.5㎡ 	
	공개공지형 쌈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형 쌈지공원조성 - A block : 422.2㎡ (대지면적의 7%) - B block : 611.0㎡ (대지면적의 7%) 	
공공보행통로		-
전면공지	인도부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범로변 3m 조성 -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을 따름 	
	차도부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측 이면도로로변 3m 조성 -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 	

※ 본 세부개발계획에서 결정한 공개공지의 위치는 준수해야할 사항이나 형태 및 면적 등은 건축인·허가시 조정이 가능함

※ 공개공지 조성지침

- 1. 공개공지는 규제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추후 건축계획에 따라 각각부나 간선도로변에 한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2. 공개공지는 가로변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이 45㎡이상 확보
 - 최소폭 5m 이상 확보
 -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세부 개발계획)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298) 및 용산구 도시정비과(☎ 710-327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 구역명 : 용두구역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87호

도심재개발구역(용두구역)변경결정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3호(2000. 2. 9)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15호(2001. 6. 28) 및 같은고시 제2002-225호(2002. 6.20)로 구역변경 결정된 용두구역 제5지구에 대하여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138,9) 및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2127-494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지구명	구분	위 치	시행 면적 (㎡)	사업계획내역(㎡)				비고	
				획지 면적	공공시설면적				
					계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1 지구	기 정	용두동 92-1 대 일대	4,022.4	2,787.6	1,232.8	622.8	612.0		
	변 경		4,068.3	2,833.5					
2 지구	기 정	용두동 90-1 대 일대	4,373.9	2,725.5	4,077	2,393.8	1,683.2		
	변 경		4,378.3	2,729.9					
5 지구	기 정	용두동 90-3 대 일대	11,784.4	7,707.4	4,077	2,393.8	1,683.2		
	변 경		11,734.1	7,657.1					
※ 기타지구는 변경사항 없음									
3. 건축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명	구분	위 치	획지면적 (㎡)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수 (높이)	지하 층수	주된 용도	용도 구성
1지구	변경전	용두동 90-3 대 일대	2,787.6						
	변경후		2,833.5						
2지구	변경전	용두동 90-1 대 일대	2,725.5						
	변경후		2,729.9						
5지구	변경전	용두동 90-3 대 일대	7,707.4						
	변경후		7,657.1						
※ 기타지구는 변동사항 없음									
4.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 변동사항 없음 5.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 비과 및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 정비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8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예능보유자인정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인정 내용을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명 칭	지정번호	예 능 보 유 자			고 시 내 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파 다리밧기	제3호	유근우	441205-	동대문구 휘경2동 312-60	송파 다리밧기 놀이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전수교육 조교를 예능보유자로 인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90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서울특별시 영등포 대림3동 722번지일대 하수관거확장공사건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하여 인가하고, 하수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1) 명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나. 사업시행 목적 : 관의 크기가 작은 기존하수도를 개량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함.

다.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별항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조서 참조)

라. 설치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별항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별항

바. 사업시행기간 : 별항

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별항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 별항

자.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계획과(☎ 3707-9931), 영등포구 치수과(☎ 2670-3415~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조서

연번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설치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예정 배수 구역	예정 하수처리 구역	사업시행 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위 치	면적 (㎡)	종류	명칭				구분	지 번	지목	소유권의 의권리	소유자		이해 관계인
												성 명	주소	
1	대림3동722 번지일대 하수관거 확장공사 (대림동722 번지의 4개소)	929	원형	D=900~ 1200mm L=576m	안양천	서남	사업인가 일로부터 ~2003. 08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698-1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698-2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698-3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774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774-3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774-4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736-1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736-2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697													
영등포구	대림동	도로		서울특별시										
토지	669-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92호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5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1호(2002. 6.27) 및 제2002-262호(2002. 6.27)로 고시된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5 (강원산업부지)	은평구 증산동 223-4 일대	5,648	감) 6.3	5,641.7	'02.06.27	수색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변경	은평구 증산동 223-4 일대	5,641.7	- 측량에 의한 면적오차 정정(감소 6.3m ²)

2. 용도지역 결정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648	감) 6.3	5,641.7	100.0	-수색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155	감) 19.3	5,135.7		91.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93	증) 13.0	506.0		9.0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경결정사유				
-	은평구 증산동 223-4일대				준주거지역	5,135.7	-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측량오차 정정(감소 19.3㎡)				
-	은평구 수색동 66-1일대				자연녹지지역	506.0	-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측량오차 정정(증가 13㎡)				
3. 도시기반시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204 (83)	증산동 223-14	증산동 223-2	일반 도로	-	'02.06.27	-()는 수색지구특별 계획구 역-5 -변경되는 도로부분 설치제공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319 (56)	수색동 33-6	수색동 81	일반 도로	-	'02.06.27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	완충 녹지	수색동 68-1일대	1,650 (437)	- 증) 8.8	1,650 (445.8)	'02.06.27	-녹지는 설치제공			
○녹지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녹지명	변경내용						비 고				
	완충 녹지	- 전체 완충녹지면적 1,650㎡중 437㎡에서 445.8㎡로 면적 8.8㎡증가						-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녹지 측량오차 정정				
5.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획지 계획	- 블럭단위 공동개발 - 기부채납면적 · 특별계획구역의 15% 이상				- 블럭단위 공동개발 - 획지면적 : 4,352.9㎡ - 기부채납면적 : 1,288.8㎡ - 기부채납비율 : 22.8%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의 획지개발규모 설정은 필요치 않음			
※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기부채납 비율)												

6.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 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아래용도 .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제조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계장 . 공공용 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제외) -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불허용도 준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 <건축물의 용도> - 주거(오피스텔 포함) : 비주거 = 8 : 2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구 분	2003.06.30 까지	2003.07.01 이후	-
	기준용적률	300%이하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36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높 이	- 최고높이 : 60m 이하 - 전면도로 사선제한 규정(1:1.5) 동시적용			-
	- 건축물 높이계획의 완화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 산정식 $H = (1.5+2a) \times D$ ($a = \text{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전 대지면적} = 0.228$) $= (1.5 + 2 \times 0.228) \times D = 1.956 D \geq 1.95D$ 이내 적용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특별계획구역내 공공용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비율 : 22.8%			-

7. 용적률 산정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구 분	완화항목	완화기준	산정식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뽑지공원)	$[(\text{조성면적}-\text{설치의무면적})\div\text{대지면적}] \times 1.5 \times \text{기준용적률}$	미적용
	건축한계선	$(\text{조성면적}\div\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용적률} \times 2.0$	$(520.23 \div 4,352.90) \times 300 \times 2.0 = 71.71\%$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	옥상녹화	$[(\text{조성면적}-\text{설치의무면적})\div\text{옥상면적}] \times 0.2 \times \text{기준용적률}$	미적용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 $\times 0.1$	$300 \times 0.1 = 30.0\%$
계		〈완화용적률의 합〉	101.71%
허용용적률 결정		기준용적률 + 용적률 인센티브의 합계 = 300% + 101.71% = 401.71% \geq 400%적용	
나. 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출결과	산 출 내 역	비 고
기 부 채납율	22.8%	- 기부채납율(a) = 기부채납면적 / 기부채납전 대지면적	-
		= 1,288.8㎡ / 5,641.7㎡ = 0.228	
상 한 용적률	553.58%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0.3a)/(1-a)\}$]	-
		= $[400\% \times \{(1+0.3 \times 0.228)/(1-0.228)\}] = 553.58\%$	
7. 건축물의 높이계획			
가. 높이제한 적용기준			
구 분	세부개발계획		
건축물의 높이	- 최고높이 60m 이내 - 전면도로 사선제한 규정(1:1.5) 동시 적용		
나. 최고높이제한 완화내용			
구 분	계 획 지 칩	산출근거	비 고
완화 내용	-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 $H = (1.5 + 2a) \times D$ (a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전 대지면적)	$H = (1.5+2a) \times D$ $= 1.956D \geq 1.95D$ 이내 적용	-

②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 12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2. 교통처리계획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교통처리	- 차량진출입계획 : 대상지의 서측 이면도로로 진출입계획	

※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동선계획·기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추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반영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개공지	- 부지 서측 도로 가각부에 조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3707-8297) 및 은평구 도시정비과 (☎ 350-3861)에 관계도서를 비치함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93호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4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1호(2002. 6.27) 및 제2002-262호(2002. 6.27)로 고시된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4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4 (강원산업부지)	은평구 수색동 76-14일대	12,996	증) 144	13,140	'02.06.27	수색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변 경 사 유				
변 경	은평구 수색동 76-14 일대		13,140		-측량에 의한 면적오차 정정(증가 144m ²)				
2.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996	증) 144	13,140	100.0	-수색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822	증) 156	11,978	91.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74	감) 12	1,162	9.0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²)	용적률	변 경 결 정 사 유				
-	은평구 수색동 76-14 일대	준주거지역	11,978	-	-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측량오차 정정 (증가 156m ²)				
-	은평구 수색동 68-1 일대	자연녹지지역	1,162	-	-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측량오차 정정 (감소 12m ²)				
3. 용도지구									
가. 용도지구 변경결정(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수색로 지 구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양 측	12,360 (1,680)	1,030 (140)	양측 12	'82.04.22	-()는 수색지구 특별 계획구역-4

4. 도시기반시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14	35	주간선 도로	1,005	증산동 239	수색동 375-1	일반 도로	-	'63.12.24	-()는 수색 지구 특별계획구역-4 변경되는 도로부분 설치제공
변경	대로	1	14	35~38	주간선 도로	1,005 (140)	증산동 239	수색동 375-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319 (228)	수색동 33-6	수색동 81	일반 도로	-	'02.06.27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 1-14	대로 1-14	- 신설 : 주간선도로 - B=35~38m / L=전체1,005m중 104m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일부 확폭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 지	완충 녹지	수색동 68-1일대	1,650 (798)	- (증) 18.5	1,650 (816.5)	'02.06.27	-녹지는 설치제공			
○녹지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녹지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 충 녹 지	-전체 완충녹지면적 1,650m ² 중 798m ² 에서 816.5m ² 로 면적 18.5m ² 증가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녹지 측량오차 정정						
5.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획지 계획	-블럭단위 공동개발 -기부채납면적: 특별계획구역의 15% 이상				-블럭단위 공동개발 -획지면적 : 9,736.2m ² -기부채납면적 : 3,403.8m ² -기부채납비율 : 25.9%				-			
※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기부채납 비율)												

6.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제조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도계장 ·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불허용도 준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축시 관련규정 준수 <건축물의 용도> - 주거(오피스텔 포함) : 비주거 비율 = 7 : 3			-
건폐율	- 50%이하			-
용적률	구분	2003. 6. 30 까지	2003. 7. 1 부터	-
	기준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허용용적률	400% 이하	360% 이하	
	상한용적률	500% 이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높이	- 최고높이 60m이하 - 전면도로 사선제한 규정(1:1.5) 동시적용			-
	- 건축물 높이계획의 완화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 산정식 $H = (1.5 + 2\alpha) \times D$ ($\alpha =$ 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전 대지면적) = $(1.5 + 2 \times 0.259) \times D = 2.018 D \geq 2.0D$ 이내 적용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특별계획구역내 공공용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비율 : 25.9%			-

7. 용적률 산정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구 분	완화항목	완화 내용 및 산식	용적률 완화(%)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짚지공지)	$\{(\text{조성면적}-\text{설치의무면적})\div\text{대지면적}\}$ $\times 1.5 \times \text{기준용적률}$	$\{(1,433.53-681.53)\div 9,736.2\} \times 1.5 \times 300$ $= 34.76\%$
	대지내 공공통로	$(\text{조성면적}\div\text{대지면적}) \times 1.0 \times \text{기준용적률}$	미적용
	건축한계선	$\{(\text{조성면적}\div\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용적률}\} \times 2.0$	$\{(404.33\div 9,736.2) \times 300\} \times 2.0 = 24.92\%$
	벽면한계선	$\{(\text{조성면적}\div\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용적률}\} \times 1.5$	$\{(152.77\div 9,736.2) \times 300\} \times 1.5 = 7.06\%$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	옥상녹화(조경)	$\{[(\text{조성면적}-\text{설치의무면적})\div\text{옥상면적}]$ $\times 0.2 \times \text{기준용적률}\}$	미적용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 $\times 0.1$	$300 \times 0.1 = 30.0\%$
계		<완화용적률의 합>	96.74%
허용용적률 결정		기준용적률 + 용적률 인센티브의 합계 = 300% + 96.74% = 396.74%	
나. 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출결과	산 출 내 역	비 고
기 부 채납율	25.9%	•기부채납율(a) : 기부채납면적 / 기부채납전 대지면적	-
		$= 3,403.8\text{m}^2 / 13,140\text{m}^2 = 0.259$	
상 한 용적률	577.01%	•상한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0.3a)/(1-a)\}]$	-
		$= [396.74\% \times \{(1+0.3 \times 0.259)/(1-0.259)\}] = 577.01\%$	
8. 건축물의 높이계획			
가. 높이제한 적용기준			
구 분	세부개발계획(안)		
건축물의 높이	- 최고높이 60m 이내 - 전면도로 사선제한 규정(1:1.5D) 동시 적용		
나. 최고높이제한 완화내용			
구분	계획지침	산출근거	비고
완화 내용	-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 $H=(1.5+2a)\times D$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전 대지면적)	$H = (1.5+2a)\times D$ $= 2.018D \geq 2.0D$ 이내 적용	-

②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세 부 개 발 계 획	비고
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 수색로변 건축한계선 3m 부분을 도로조성 후 기부채납 (보도로 조성)	
		- 12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3과 연결하여 3m	

2. 교통처리계획

구 분	세 부 개 발 계 획	비고
미관지구 후퇴부분	- 미관지구 기부채납 3m 부분은 보도로 조성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계획 : 간선도로(수색로) 에서의 진출입규제 / 진입과 진출을 분리 - 차량진입 : 수색로를 경유하여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로 진입 (완화 차로 계획) - 차량진출 : 대상지 남측 이면도로로 진출 (완화차로 계획)	
보행동선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특별계획구역 3과 연결조성)	

※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동선계획·기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추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반영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세 부 개 발 계 획	비고
전 면 공 지	- 수색로변 전면공지 : 폭 5m	
공 개 공 지	- 부지북측 수색로 연결 - 특별계획구역-3과 연결조성 위치지정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특별계획구역-3과 연결조성) · 벽면한계선 3m 준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3707-8297) 및 은평구 도시정비과(☎ 350-3861)에 관계도서를 비치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학교)변경 및 세부조성계획의 변경 결정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대 학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514,292	증)475	514,767	'88. 4. 2.	한 양 대학교
나.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구 분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514,767	계	514,292.00	증) 475.00	514,767.00	
				건축부지	94,771.77	증)10,939.06	105,710.83	
				녹지부지	163,766.23	증) 3,903.77	167,670.00	
				도로부지	152,349.00	감) 9,722.83	142,626.17	
				운동장부지	33,168.00	-	33,168.00	
				주차장부지	16,209.00	감) 1,910.00	14,299.00	
				광장부지	54,028.00	감) 2,735.00	51,293.00	
(2) 건축계획								
건 폐 율		용 적 륵		높이의 범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20%이하	22%이하	90%이하	110%이하					
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완화 내용 (1) 신축계획				○ 경영관(1)·경영관(2) : 7층(27.9m)이하 ○ 제2학생생활관(1) : 4층(17.3m)이하 ○ 제2학생생활관(2) : 5층(20.6m)이하 ○ 부속병원행정동 : 7층(26.5m)이하				

○ 제3음악관 : 4층(17.3m)이하
 ○ 첨단과학관 : 7층(27.6m)이하
 (2) 증축계획
 ○ 제2교육관 : 6층(26.2m)이하
 ○ 음악관 : 6층(24.5m)이하
 ○ 사회과학관 : 7층(18.7m)이하
 ○ 한양여대본관 : 7층(27.8m)이하
 ○ 초등학교 : 6층(22.2m)이하
 ○ 교육관 : 6층(25.1m)이하
 ○ 자연대과학관 : 7층(27.9m)이하
 ○ 제2산학기술관 : 7층(27.9m)이하
 ○ 정보종합센터 : 5층(22.0m)이하
 3.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731-6347) 및 성동구청 도시도시정비과(☎ 2290-7385)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9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를 변경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결정 취지

-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 및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결정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은평구	기정	가좌로	역사문화미관지구(제4종) 응암동669-1 ~ 신사동265-4	57,600	2,400	양측12	'82.4.22	
		변경	가좌로	일 반 미관지구 응암동669-1 ~ 신사동228-35	42,000	1,750	양측12	
	변경	가좌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사동229-24 ~ 신사동265-4	15,600	650	양측12		존치
서초·강남구	기정	남 부 순환로	역사문화미관지구(제4종) 사당동 ~ 도곡동	143,520 (148,800)	6,200	양측12	'90.11.7	
		변경	남 부 순환로	일 반 미관지구 서초IC ~ 도곡동(연주로)	47,520	2,200	양측및편측12	
	변경	남 부 순환로	중심지미관지구 서초동1366-18~도곡동956-4	6,360	450	편측12		양제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남 부 순환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방배동(지하철공사)~서초IC	96,000	4,000	양측12		존치

다. 관계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은평구 도시정비과, 서초구 도시관리과,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라.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731-6344)와 은평구 도시정비과(☎ 350-1385), 서초구 도시정비과(☎ 570-6385), 강남구 도시계획과(☎ 2104-183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65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사항을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신고인

- 등록번호 : 제441호
- 상호 : (주)전통마당
- 대표자 : 손상운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5층

○신고사항

- 폐업일자 : 2003. 6.18
- 사유 : 영업정책 변경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66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사항을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신고인

- 등록번호 : 제487호
- 상호 : (주)트윈라이프
- 대표자 : 송송순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3-10 중앙빌딩 3층

○신고사항

- 폐업일자 : 2003. 6.21

- 사유 : 영업실적 저조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71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사항을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신고인

- 등록번호 : 제333호
- 상호 : (주)뷰티앤뱅크
- 대표자 : 이문신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1-13

○신고사항

- 폐업일자 : 2003. 6.20
- 사유 : 영업실적 저조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72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변경사항

○신고인

- 등록번호 : 제509호
- 상호 : (주)비비씨플러스넷
- 대표자 : 배병천

○변경내용

- 변경전
 - 상호 : 쿨존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02-2676-9004 - 변경후 • 상호 : 비비씨플러스넷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30 우리빌딩 3층 • 전 화 : 02-564-6906 <p>나. 변경일자 : 2003년 6월 24일</p> <p>※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02)3707-9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73호 일반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수리</p> <p>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에 대하여 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p>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입원	신고수리일	비고
토목건축공사업 제1755호	나성토건(주) 110111-0534083 임기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3-7 ☎ 596-1240	나규봉 480625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10139호	조호종합건설(주) 130111-0031459 임광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8-6 ☎ 593-2483	이정범 450614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1653호	유평건설(주) 110111-1268675 김용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3-16 ☎ 593-4567	김영태 400201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2048호	(주)아이비하우징 110111-0756291 강병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23-23 ☎ 518-3304	강병선 530827 _*****	2003.5.17	.
토목공사업 제10073호	일우종합개발(주) 110111-2229808 송연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25-4 ☎ 3471-0400	송연호 560623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10268호	일우종합개발(주) 110111-2229808 송연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25-4 ☎ 3471-0400	송연호 560623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39	(주)우건토건 110111-1139602 김학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52-5 ☎ 3472-1960	최병철 390106 _*****	2003.5.17	.
토목공사업 01-0033	창보종합건설 640528-***** 오병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21-8 ☎ 599-2501	이철재 400115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1293호	(주)조인건설 110111-0651219 이선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3-5 ☎ 3481-8801	오성택 641128 _*****	2003.5.17	.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신고수리일	비고
토목건축공사업 제1328호	청와건설(주) 110111-0273071 채 승 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8-21 ☎ 534-0118	채승락 391106 _*****	2003.5.17	.
조경공사업 01-0025	전도종합건설 600920-***** 전 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25-1 ☎ 535-7692	오주일 510118 _*****	2003.5.17	.
토목공사업 01-0105	길도건설(주) 110111-0653926 조 동 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 3481-6511	조동락 490117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044	길도건설(주) 110111-0653926 조 동 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 3481-6511	조동락 490117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89	(주)동혁종합건설 110111-1162992 최 영 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0-2 ☎ 3486-0550	박병호 500725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2025호	(주)거성토건 110111-0921852 강 재 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1 ☎ 585-8877	강재봉 590120 _*****	2003.5.17	.
조경공사업 제10062호	(주)거성토건 110111-0921852 강 재 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1 ☎ 585-8877	강재봉 590120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622호	라이트건설(주) 110111-0376974 신 이 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7-1 ☎ 525-8833	신이범 430902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2057호	현원종합건설(주) 110111-0891914 현 정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5-3 ☎ 518-0105	현정원 460101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066	운현종합건설(주) 110111-1695836 김 도 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3-7 ☎ 525-0010	김도형 510809 _*****	2003.5.17	.
토목공사업 01-0197	송림종합조경(주) 110111-1809619 임 상 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3 ☎ 574-0331	임상규 501226 _*****	2003.5.17	.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신고수리일	비고
조경공사업 제10018호	송림종합조경(주) 110111-1809619 임상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3 ☎ 574-0331	임상규 501226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1172호	동해종합건설(주) 110111-0645361 유재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2 ☎ 571-5101	권영철 380322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40022호	선인종합건설(주) 160111-0004046 임종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9-1 ☎ 572-3424	탁영도 330304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147	진향종합건설(주) 110111-1815145 김인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3 ☎ 578-0967	김인규 500904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192	이레조건(주) 110111-1857072 송영배·민병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5-5 ☎ 529-4380	설현석 600215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1252호	청광건설(주) 110111-0418271 허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6-4 ☎ 3461-3600	허승 570818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99	경기산업개발(주) 110111-2028391 정희공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9-4 ☎ 485-7807	김영구 390930 _*****	2003.5.17	.
조경공사업 01-0087	경기산업개발(주) 110111-2028391 정희공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9-4 ☎ 485-7807	김영구 390930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779호	홍익주택종합건설(주) 110111-0615760 서정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67 ☎ 475-3101	조성일 350310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807호	은선종합건설(주) 110111-1079733 조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4동 877-1 ☎ 879-0004	박수하 360519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2644호	묘광종합건설(주) 110111-1070872 김영웅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 3284-3200	설재용 620428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014	(주)만동 110111-0945969 하명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1007-39 ☎ 516-7141	김영기 510114 _*****	2003.5.17	.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신고수리일	비고
토목공사업 제10099호	성호건설 610628-***** 송영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5-7 ☎ 413-8144	송영찬 610628 -*****	2003.5.17	.
건축공사업 01-0196	(주)용화토건 110111-1574395 유태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3-2 ☎ 847-0110	유태근 650615 -*****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266호	벽산건설(주) 110111-0016827 정중득·김희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 767-5210	김희철 370308 -*****	2003.5.17	.
산업설비공사업 01-0007	벽산건설(주) 110111-0016827 정중득·김희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 767-5210	김희철 370308 -*****	2003.5.17	.
조경공사업 01-0017	벽산건설(주) 110111-0016827 정중득·김희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 767-5210	김희철 370308 -*****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1016호	월드건설(주) 110111-0346331 조규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 3779-0348	조규상 390820 -*****	2003.5.17	.
조경공사업 제10012호	지산원 520113-***** 김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0 ☎ 2634-5513	강무치 430603 -*****	2003.5.17	.
건축공사업 제10239호	(주)희림종합건설 110111-0505523 홍환희·한동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13 ☎ 558-0731	한동섭 581021 -*****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1400호	용일토건(주) 110111-0645262 윤인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6-20 ☎ 538-4503	김장호 470620 -*****	2003.5.17	.
토목공사업 제655호	서준건설(주) 110111-2104670 손승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6-20 ☎ 3453-1275	손승호 570527 -*****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54	서경건설개발(주) 110111-0805098 김귀자·오성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3-7 ☎ 501-9140	오성균 490620 -*****	2003.5.17	.
토목공사업 제604호	엠에스이건설(주) 110111-2101452 이정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6-20 ☎ 501-3784	이정우 520723 -*****	2003.5.17	.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신고수리일	비고
토목공사업 제10065호	따블유에이취건설(주) 110111-1627798 조 중 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6-21 ☎ 508-1272	조중성 530923 *****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03	유호산업개발(주) 110111-1896179 유 정 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6-9 ☎ 556-8411	유정환 610516 _*****	2003.5.17	.
조경공사업 제10015호	유호산업개발(주) 110111-1896179 유 정 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6-9 ☎ 556-8411	유정환 610516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088	일신진흥건설(주) 110111-1676670 이진택·이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67-24 ☎ 571-5577	김희성 480407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73	(주)윤익건설 110111-0620397 조 재 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13 ☎ 6230-2070	방효원 300709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69	성부종합건설(주) 110111-1079957 공 영 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0-9 ☎ 538-7257	공영준 401227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568호	천지산업(주) 110111-0133027 김종영·임재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 ☎ 569-0450	김종영 420217 _*****	2003.5.17	.
건축공사업 15-0043	상무종합건설(주) 204311-0008215 김 인 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4-10 ☎ 1544-1518	김강황 430611 _*****	2003.5.17	.
건축공사업 제10253호	(주)태극종합건설 110111-0234198 양 희 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84-5 ☎ 2632-1060	김석기 460815 _*****	2003.5.17	.
토목공사업 01-0005	(주)부강종합토건 110111-2107773 이 병 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3-13 ☎ 834-2955	이종배 441030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1298호	천호건설(주) 110111-0645311 김 영 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 835-6211	강호영 510527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149	(주)송주종합건설 110111-1660384 김 도 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410-143 ☎ 843-8662	조한규 380129 _*****	2003.5.17	.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신고수리일	비고
토목건축공사업 01-0076	신성윌드건설(주) 110111-0556815 이 기 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2-1 ☎ 2672-0297	이기언 440612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2363호	(유)평정종합건설 210114-0012331 박 경 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88-3 ☎ 835-0267	김충길 400626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2564호	(주)한국공업건설 180111-0080191 라 채 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5 ☎ 2638-0928	황기주 380620 _*****	2003.5.17	.
조경공사업 01-0024	우신종합조경(주) 110111-1648356 오 문 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 ☎ 2672-9291	오문응 400820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054	(주)한빛씨에스 110111-1675276 이 종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1 ☎ 2637-4700	곽원문 450205 _*****	2003.5.17	.
토목공사업 01-0068	한서종합조경 620209-***** 허 동 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29 ☎ 2632-3370	허동창 620209 _*****	2003.5.17	.
조경공사업 제50010호	한서종합조경 620209-***** 허 동 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29 ☎ 2632-3370	허동창 620209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24	(주)창덕이앤씨 110111-1003633 강 호 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 786-5367	강호식 520808 _*****	2003.5.17	.
토목공사업 01-0015	이암조경건설(주) 110111-1638836 이 광 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7 ☎ 2632-9093	김대근 510105 _*****	2003.5.17	.
토목공사업 제10041호	엘테크건설(주) 110111-0750201 임 공 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12 ☎ 449-6952	유선형 350928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132	에스엠이앤씨(주) 110111-1786875 변 상 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97 ☎ 443-4184	유기환 520225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01-0077	문선종합건설(주) 110111-1054181 문 병 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3-8 ☎ 2203-7161	조석길 630214 _*****	2003.5.17	.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신고수리일	비고
토목건축공사업 01-0095	(주)건축과공간 110111-1070921 고영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84-2 ☎ 425-6800	박종일 700801 _*****	2003.5.17	.
토목공사업 01-0106	(주)건림원 110111-0226210 윤오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 7-8 ☎ 542-8160	윤오임 340801 _*****	2003.5.17	.
조경공사업 제86호	(주)건림원 110111-0226210 윤오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 7-8 ☎ 542-8160	윤오임 340801 _*****	2003.5.17	.
토목공사업 01-0036	대송종합건설(주) 110111-1748255 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45-3 ☎ 404-1667	최규호 370412 _*****	2003.5.17	.
건축공사업 01-0109	(주)성암건설산업 110111-0356653 노수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1-23 ☎ 406-0892	노수중 530902 _*****	2003.5.17	.
토목공사업 제10149호	에스에이치종합건설(주) 110111-0619019 황성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7-13 ☎ 431-5812	김정규 340720 _*****	2003.5.17	.
토목건축공사업 제2498호	신안도시개발(주) 110111-0977219 박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8 ☎ 512-2687	박순주 620801 _*****	2003.5.1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75호
2003도심재개발사업용자계획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도심재개발사업용자계획을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 용자신청대상자 : 이 공고일 이전에 도심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지구의 사업시행자(단, 금회 용자시행 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지구의 사업시행

자는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용자신청 가능)

- 제외대상지구
 - 가. 사업시행자가 부도중 이거나 법적쟁송중인 지구
 - 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임시 사용중인 지구

2. 용자대상 순위 결정 기준

- 용자결정 순위
 - 1순위 : 2003년 도심재개발사업 용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도심재개발사업인가를 받고 신청지구에 용자대출을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다만, 순위별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도심재개발

<p>사업조례시행규칙제 26조 규정에 의거 “별표2”에서 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 순위로 우선순위 결정</p> <p>- 2순위 : 2003년 도심재개발사업 용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도심재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신청지구에 용자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 있는 사업시행자</p> <p>※ 각 순위내에서 가중치가 같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그 시설이 많은 지구를 우선순위 결정</p> <p>① 주거복합시설 ② 도심환경개선시설 ③오피스텔등 이와 유사한 시설④ 숙박시설 ⑤공공시설부담이 많은 지구</p> <p>3. 용자대상자의 결정</p> <p>○용자시행금액 범위 안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잔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2순위 대상자에게 용자지원함.</p> <p>4. 용자금액의 결정</p> <p>○용자금액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 제34조의 범위내인 건축공사비의 40%까지로 하되 지구당 최고 한도액은 200억원 으로 함.(단 각 순위별 용자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2”에서 정한 가중치를 점수로 계산한 우선순위 순으로 선 순위 대상자에게 용자지원 하고 잔여금액 발생시 차 순위 대상자에게 용자지원 한다.)</p> <p>※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p> <p>- 사업시행 인가지구 : 사업시행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시설공사비</p> <p>- 관리처분계획 인가지구 :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시설공사비</p>	<p>※ 2순위 대상자의 용자최고한도액은 기존에 대출받은 용자금을 포함한 결정금액을 건축공사비의 40%까지 및 200억원 이내로 함</p> <p>5. 용자시행 금액 : 500억원</p> <p>6. 용자금 대출시기 : 각 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여신심사 완료후 은행에서 대하요청이후 대출</p> <p>7. 용자자격 상실</p> <p>○용자신청자중 용자대상자로 결정되어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출받지 않을 경우 용자대상자 자격상실</p> <p>8. 상환기간 및 방법</p> <p>가. 상환기간 : 5년(상환기간내라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완료공고 7일전까지 상환하여야함.)</p> <p>나. 상환방법</p> <p>○원금 : 3년거치후 2년간 년 4회 균등분할 상환</p> <p>○이자 : 거치 기간없이 분기별 상환</p> <p>9. 이율 : 년5%</p> <p>10. 신청기간 : 2003. 6.30. ~ 2003. 7.14.</p> <p>11. 신청서류</p> <p>가. 도심재개발사업 용자신청서(서식 별첨) 1부.</p> <p>나.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p> <p>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p> <p>라. 용자금 사용계획서 1부.</p> <p>1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도심재개발팀 김태철 담당(☎ 3707-813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별표1)

도심재개발사업용자신청서	
신청자	구역및지구명 : 구역 지구
	사업시행기간 :
	주 소 :
	상호(업체명):
	대 표 자 : 전화번호 :
	건 물 용 도 :
신청 금액	금 원정(₩)
취급 은행	은행 지점
<p>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 용자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 2.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 3. 용자금 사용계획서 1부. <p style="text-align: center;">위 확인자 : 구청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직 급 : 성명 : (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별표2)

용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건물 용도	1	주거복합시설	5
	2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공간: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공기여시설)	3
	3	오피스텔등 이와 유사한 시설	1
공공시설 부담률	1	20%이상	5
	2	15%이상	3
	3	15%미만	1
건축착공 여부	1	사업시행인가후 철거가 진행중인지구	5
	2	건축착공 신고를 한 지구	3
	3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지구	1
용자지원 여부	1	용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지구	5
	2	용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지구	3
	3	용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용자상환중인 지구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77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다단계판매업자 행정처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부칙 제2조제2항을 위반한 다단계판매 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가. 행정처분 내역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내용
대 상 업 체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리빙월드컴(7)	함명식	강남구 역삼동 679-4호 로담코빌딩 5층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미체결 등 등록사항 보완 신고 미이행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25·34조 및 동법부칙 제2조 제2항	등록취소 (직권)
대영알비지네트 워크(14)	송현우	강남구 삼성동 157-8호 엘지트윈텔 302			
성공자의모임 (50)	이경탁	종로구 경운동 89-4호 고합빌딩 4층			
트레지코리아엔 (63)	강미옥	강남구 역삼동 705-1호 빅토리아빌딩 1106			
해바른(107)	박남용	강남구 역삼동 834-34			
행복한소리(112)	이은경	서초구 우면동 64-1호 중평빌딩 7층			
무궁화홈쇼핑 이십일씨(119)	김대수	서초구 잠원동 28-1호 푸른상호신용금고빌딩 4층			
아피오인터내셔 날코리아(145)	테 라 오 도시유기	강남구 삼성동 140-28호 현죽빌딩 1층			
미찬들(175)	백승훈	용산구 한강로2가 187-7호 유신빌딩 1층			
인터썹큐(182)	이국열	강남구 삼성동 168-22			
지엘엠코리아 (192)	여봉남	강서구 등촌동 685번지			
젠티코리아 (194)	조란바 요비치	종로구 원남동 66-21호 보령빌딩 10층			
보이스컴(205)	방태준	강남구 논현동 210-1호 삼원빌딩 5층			
피크노(222)	최춘자	강남구 역삼동 696-39호 영신빌딩 3층			
솔의힘(227)	김동신	광진구 화양동 7-2호 삼진빌딩 401호			
피에이치티인터 내셔널(229)	김성규	강남구 역삼동 832-7호			
조이플러스(232)	이유재	서초구 서초동 1572-18호 만송빌딩 7층			
나우프랜드인터 스트리(233)	이창현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사무동 21층			
우리사랑네트워크 (240)	성희석	관악구 신림동 1422-11호 동산빌딩 4층			
천삼코리아 (242)	권상욱	강남구 역삼동 696-5호 합지빌딩 4층			
앤도스(244)	박선아	광진구 노유동 6-20호 조양빌딩 301호			
극동델파이 (252)	정해영	강남구 역삼동 647-2호 삼원빌딩 3층			

대 상 업 체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내용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두루맥스(253)	홍석원	서초구 방배동 445-4호 동운빌딩 302호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미체결 등 등록사항 보완 신고 미이행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25·34조 및 동법부칙 제2조 제2항	등록취소 (직권)
애니엔컴(264)	박철우	서초구 서초동 1573-13호 삼더다솜빌딩 2층			
지엔누리(265)	서중필	서초구 서초동 1550-1호 안화빌딩 지하1층			
허리케인인터 내셔널(266)	조근혁	강남구 역삼동 708-8호 세방빌딩 2102호			
이플드라이프 (268)	최원임	강남구 역삼동 649-14호 현대생명빌딩 10층			
비엔에이코리아 (269)	이만열	강남구 삼성동 29-1			
플든게이트인터 내셔널(275)	표성근	강남구 삼성동 140-17호 유니콘빌딩			
플룩스(276)	김한규	강동구 명일동 306-1호 해동빌딩 7층			
엔케이엠(277)	손창호	송파구 방이동 180-8호 해태빌라트 302호			
드림빅코퍼레이션 (281)	박태동	동작구 사당동 1051-23호 301호			
인테크인터내셔널 (287)	박희봉	강남구 논현동 120번지 건우빌딩 6층			
퍼시픽코리아몰 (288)	안창호	동작구 신대방동 686-53호 605호			
플라토닉(289)	박명준	금천구 독산동 1031-25호 보광빌딩			
한미쇼핑(290)	김성도	강남구 역삼동 649-10호 산대빌딩8층			
원플러스닷컴 (299)	신경진	서초구 방배동 981-15호 양지빌딩 302호			
위더스웨이(300)	이중식	서초구 방배동 915-9			
이젠탑(302)	이옥희	중구 수포동 47-6호 천수빌딩 1101호			
월드웰네스코리아 (307)	류민식	서초구 방배동 899-5호 화인빌딩 2층			
글로벌플러스 (308)	임창남	양천구 신월동 23-17호 세양빌딩			
내외테크라인 (310)	임상범	강남구 대치동 890-8호 연봉빌딩 지하1층			
천상운집(312)	최장환	강남구 역삼동 647-5호 대성빌딩			
씨엠에프인터내셔널(313)	김명운	강동구 성내동 244번지 오석빌딩			
엘티씨코리아 (316)	이래선	강남구 역삼동 705-19 호 동아신용금고 6층			

대 상 업 체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내용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두성그린앤썬이머 (319)	김정식	관악구 봉천동 870-2호 은일빌딩 2층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미체결 등 등록사항 보완 신고 미이행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25·34조 및 동법부칙 제2조 제2항	등록취소 (직권)
조이누리(320)	정진상	강남구 대치동 968-4호 일동빌딩 6층			
글로발지앤비 (322)	용장영	강남구 역삼동 642-1호 역삼벤처텔 3층			
나이스온인터 내셔널(324)	채관수	서초구 방배동 440-7호 대일빌딩 5층			
에스피엔(328)	권영서	서초구 서초동 1550-1호 인화빌딩 102호			
다맥코리아 (330)	이화순	은평구 녹번동 176-27호 선재빌딩 4층			
에이에프비인터 내셔널(337)	허용강	강서구 등촌동 678-13호 진성프라자 4층			
다우리플러스 (343)	신용오	동대문구 청량리동 738번지 현대코아 지하1층			
트리플마켓월드 (346)	강명권	강남구 삼성동 128번지 삼성에스케이주유소 2층			
펜엔페이퍼 (350)	유승우	중구 남대문로5가 21-1호 신남문빌딩			
청정나라(352)	서정자	강남구 논현동 181-6호 우성빌딩 2층			
세종레크피어원 (353)	김태희	강남구 역삼동 642-1호 3층			
실크원(358)	서재완	강동구 천호동 333-46호 호집빌딩 2층			
뉴젠티트피아 (363)	김옥자	성동구 성수2가3동 279-50 대우프레시아 지층1호			
스닥벤처유통 (369)	조태진	동대문 용두동 251-52			
라이프찬스원 (377)	이승미	광진구 능동 222-1호 동우빌딩 301호			
옥고을(382)	박달남	서초구 서초동 1502-12호 2층			
한반도지에스지 (383)	송병기	서초구 서초동 1604-19 대호프레조빌리지 1층			
아미테스트코리아 (398)	안경대	강남구 역삼동 832-7호 황화빌딩 302호			
신기에스(399)	백동인	서초구 잠원동 13-7호 은하빌딩 2층			
그린프릭스(404)	임채규	송파구 방이동 39-2 신동아타워 804호			
스마일피플(416)	손명환	중구 남창동 169-2호삼선빌딩 1113호			

대 상 업 체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내용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애니탑인터내셔널 (429)	김종범	강남구 역삼동 642-1호 603호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미체결 등 등록사항 보완 신고 미이행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25·34조 및 동법부칙 제2조 제2항	등록취소 (직권)
다다플러스(430)	박삼수	강남구 역삼동 649-14호 현대생명 7층			
엔엔씨오(432)	고광덕	강남구 역삼동 647-2호 상원빌딩 3층			
브레스엔피플 (435)	이종식	종로구 창신동 328-18 삼우텍스프라자 12층			
렉서스인터내셔널 코리아(451)	박혜숙	서초구 서초동 1539-6호 경흥빌딩 2층			
푸른숲네트웍 (455)	한상목	강남구 역삼동 649-14호 현대생명빌딩 9층			
엔에스케이이나사 생명(456)	박후남	중구 신당동 112-7 국일빌딩 4층			
이에프인터내셔널 (458)	김진복	중구 필동1가 43-1호 동화빌딩 208호			
앤닷컴내셔널 (460)	김미정	강남구 역삼동 683-26호 신릉빌딩 203호			
원원네트코리아 (466)	김명숙	서초구 서초동 1552-15호 서광빌딩 3층			
엠아이텔레콤 (467)	심만섭	강남구 역삼동 689-3호 성민빌딩 4층			
삼부텔레콤인터 내셔널(468)	곽형기	강남구 역삼동 669-4.5호 지하1층			
드림인라이프 (475)	노춘근	강남구 역삼동 823-30호 라인빌딩 8층			
이엔아이홀딩 (477)	정재창	강남구 역삼동 832-7호 황화오피스텔 7층			
에즈네트코리아 (481)	김진우	강남구 역삼동 641-3호 노바빌딩 3층			
모던비즈니스 (498)	오득근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870호			
모바일이노비즈 (499)	김상순	강남구 역삼동 705-15호 장원빌딩 301호			
몰인몰코리아 (501)	이강주	관악구 봉천동 859-15호			
글로벌드림썬세스 코리아(502)	조선행	강남구 역삼동 824-11호 한라클래식 4층			
한국네트웍메가몰 (239)	이종원	송파구 방이동 51-11호 대종빌딩 2층			
솔포혜밀리(59)	서석환	강남구 역삼동 824-11호 한라클래식 4층			

나. 행정처분 일자 : 2003년 6월 24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02-3707-93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81호

일반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등록일	비고
토목건축공사업 -01-0232	광덕토건(주) 110111-0419063 문광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81-3 ☎ 978-2784	안성태 620825 -*****	2003.6.25	.
건축공사업 -01-1756	(주)대승씨엔아이 110111-2780785 김재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8-172 ☎ 911-5165	최해균 550320 -*****	2003.6.25	.
건축공사업 -01-1757	태대종합건설(주) 110111-1606784 서광재·안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28-89 ☎ 496-5567	서광재 570626 -*****	2003.6.25	.
건축공사업 -01-1758	(주)세광씨엔씨 110111-2796253 이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8-11 ☎ 335-1966	유태균 610413 -*****	2003.6.2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86호

일반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전화)	경력임원	등록일	비고
건축공사업 -01-1759	남춘종합건설(주) 110111-2787640 이 기 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8-8 ☎ 587-8804	정희석 481111 -*****	2003.6.26	.
건축공사업 -01-1760	가우디피아건축(주) 110111-2789604 민 병 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00-17 ☎ 2686-0319	이상만 241122 -*****	2003.6.26	.
건축공사업 -01-1761	(주)솔스티스종합건설 110111-2777055 이 상 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3-17 ☎ 562-7576	김용섭 240702 -*****	2003.6.26	.
건축공사업 -01-1762	(주)동녕건설 110111-2782187 이 건 복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18-20 ☎ 358-6381	이두원 480405 -*****	2003.6.2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82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수리

일반건설업의 등록 반납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상호 : 광덕토건(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0419063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81-3
- 대표자 : 문광남
- 업종(등록번호) : 토목공사업01-0411
- 반납사유 : 토목건축등록(결업)
- 반납수리일자 : 2003. 6.25

- 상호 : 광덕토건(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0419063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81-3
- 대표자 : 문광남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0459)
- 반납사유 : 토목건축등록(결업)
- 반납수리일자 : 2003. 6.25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93호

자동차전용도로해제

도로법 제54조의3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가. 도로의 종류 : 자동차전용도로
나. 노선명 : 청계고가로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 구간 및 개요
가. 구간 : 중구 충무로2가 ~ 용두동 34
나. 개요 : 청계고가 폭 4차로 연장 6.9km
3. 해제 사유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청계고가 철거
4. 해제일 : 2003. 7. 1.(청계고가 철거공사 착공일)
5. 기타사항
가. 해제구간 노선도면 : 게재생략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3707-8133~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제구간 노선도면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고 시

◎중구고시 제2003-42호

도시계획사업(문화시설)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호(2003. 3. 3)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03-34호(2003. 5.20)로 변경결정 및 중구고시 제2003-15호(2003. 3.10)로 지형도면승인, 중구공고 제2003-200호(2003. 5.30)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중구 흥인동 131번지 일대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문예추진반(☎ 2260-4213)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중 구 청 장

- 가. 사업종류 : 도시계획사업
- 나. 사업시행지 : 서울 중구 흥인동 131번지 일대
- 다. 사업명칭 :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 라. 면적 : 9,463.5㎡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1.12.18 ~ 2004.12.17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기타 권리명세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 명 : 중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할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9,685.6	9,463.5					
1	홍인동 131	대지	8,341.8	8,341.8	중구청장	중구 예관동 120-1			
2	" 131-1	대지	363.0	363.0	"	"			
3	" 130	대지	234.3	234.3	"	"			
4	" 130-1	구거	18.3	18.3	"	"			
5	" 130-2	구거	185.1	185.1	"	"			
6	" 130-4	구거	87.5	87.5	"	"			
7	" 126	대지	283.0	60.9	공정옥	강동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A.2-502			
					남국현	광진구 광장동 145-8 위켜힐아파트25동 403호			
					남일현	광진구 광장동 218-1 극동아파트 3동405호			
8	" 128	대지	172.6	172.6	이두환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A.101-1406	주식회사 한빛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종로4가지점)	근저당권

건 물 조 서

■ 사 업 명 : 중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용할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	홍인동 128	건물	철근콘크리트 지하1-지상4	480.72	이 두 환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A.101-1406	주식회사 한빛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종로4가지점)	근저당권
2	" 132외3	"	연와조와즙 및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69.69 중 75.2	김 영 춘	강동구 성내동 208-7호			

영 업 조 서

■ 사 업 명 : 중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일련 번호	소 재 지	상 호	수용할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	홍인동 128	동일미용상사	1식	한진욱	종로 창신3동 쌍룡(아) 204-901호			
2	"	삼화볼트	1식	이벽규	성동 행당동 347번지 행당대림(아)121-104호			
3	"	프리텔고시원	1식	채점기	서울 중랑 망우1동 405-19호(26/7반)			
4	홍인동 132외3	한솔무늬목	1식	신용주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118동 304호			
5	"	성은나염	1식	송영호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7-13호 우림6차202호			

◎용산구고시 제2003-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청사)실시계획
인가

- 1.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3-16호 (2003. 4.3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변경 및 결정, 지형도면 승인된 용산구 도원동 4-20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 1) 사업시행의 위치 : 용산구 도원동 4-20외 2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공공청사)
 - 나) 사업의 명칭 : 용문동청사 및 공영주차장 신축건립
- 3) 사업규모(추가면적) : 79.8㎡
-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용산구 원효로1가 25, 용산구청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민자치과(☎ 710-341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용산구 원효로1가 25번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명 : 용문동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및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	도원동 19-1	도로	57.8	57.8	도로	용산구	용산구 원효로1가 25						
2	도원동 4-20,103	도로	22.0	22.0	도로	천선봉	용산구 도원동 4-8					7분의1	
						이성백	"						7분의1
						신경현	"						7분의1
						양윤희	"						7분의1
						최양근	"						7분의1
						김창순	"						7분의1
						안재덕	"						7분의1

2. 물건조서 : 해당사항없음

Ⓞ용산구고시 제2003-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용산구 이촌동 205-4번지 외1필지상 주택 건설사업계획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 1. 사업명 : 이촌동 지역주택조합
- 2. 사업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05-4번지 외 1필지

- 3. 사업주체 : 이촌 동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정일현
 (주)동원이엔씨 대표이사 강병원
- 4. 시공자 : (주)동원이엔씨 대표이사 강병원
- 5. 사업시행면적
 가. 사업지구면적 : 4,410.20㎡
 나. 대지면적 : 4,410.20㎡
- 6. 사업규모
 가. 연면적 : 14,804.855㎡
 나. 건축면적 : 1,148.484㎡
 다. 규모 : 지하2층/지상14층 2개동 103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7. 사업기간 : 2003. 6. ~ 2005. 6.
- 8.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4항 각호에 관련된
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제15
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
수도의 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
비의 설치신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및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오수처
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9.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문의전화 :
용산구청 건축과 담당 한일기 ☎ 02-
710-3390)

◎성동구고시 제2003-5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3년 6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 1. 사업명 : 보성연립재건축사업
- 2. 사업주체 : 보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이연하
우성훤씨시(주) 대표 조성용·김진석
- 3. 사업개요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13-
463호외 2필지
○ 대지면적 : 2,527.30㎡
○ 연면적 : 6,645.95㎡
○ 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3층 1개동
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2003. 7. ~ 2004.10

- 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등
- 6. 승인내용 및 기타관련도서는 성동구청
건축과(☎ 2290-7390~3)에 비치함.

◎광진구고시 제2003-3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4호(1973.12.11)
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
인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03-197호(2003. 5.30)로 도시계획시
설(도로)열람공고한 『능동 372번지 주
변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
과(☎ 450-1405~7)에 비치하여 토지
(건축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광진구 198~369-
15호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능동 372번지 주변 도
로개설 공사
- 다. 규모
○ 도로개설 : 폭 6m, 연장 60m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마. 사용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로부터 5년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 도로과(☎ 450-1405~7) 및 건설
행정과(☎ 450-140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능동 372번지 도로개설 공사

-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777번지
 - 3.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모지번)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역	
1	광진구 능 동	198	도	44	44		광진 구청						
2	광진구 능 동	198-4	전	5	5		박종엽		서울시 광진구 능동 174				198-1
3	광진구 능 동	373-1	대	19	19		김성춘	1/2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62-1				373
							김태복	1/2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5-11				
4	광진구 능 동	201-3	대	53	53		신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47-34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근저당권	201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지 상 권	
5	광진구 능 동	372-1	대	212	212		곽홍수		서울시 성동구 능동 372				372
6	광진구 능 동	371-3	대	10	10		이우명	2177/ 4354	서울시 성동구 능동 371-1				371-1
								1173471.42 /2708188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101-1				
7	광진구 능 동	369-1 5	전	38	38		박동출		서울시 성동구 능동 245-11				

건물(지장물) 조서

- 1.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7
- 3.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물건조서 : 건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능동	372	건물1층	시멘트 연외조	77㎡		곽홍수의 1인	성동구 능동 371				
			출입문	알미늄(3.0×1.7)	1개	주 출입문 + 가동2개						
			출입문	알미늄(1.0×1.7)	2개							
			보일러실	알미늄(3.0㎡)	1식							
			보일러		2개							
			정화조		1식							
			전기계량기		1식							
			담장	콘크리트	H=2.0m, L=3m							
			담장	콘크리트	H=1.0m, L=1.0m							
2	능동	198-4	담장	콘크리트	H=1.0m, L=8m		박종엽	광진구 능동 174				
3	능동	373-1	담장	콘크리트	H=1.8m, L=1.5m		김성춘외1	광진구 중곡동 162-1				

◎강북구고시 제2003-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1997-104호('97. 12.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되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3-17호(2003. 3.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된 『번3동 621~18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치수과(☎ 901-6216) 및 건설관리과(☎ 901-62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결정고시	지형도면 승인	비고
당초	강북구 번동 272-5~621-5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번3동 621~18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폭 6m 연장 90m	서울특별시강북구 고시 제97-104호 (1997.12.2)	서울특별시강북구 고시 제97-104호 (1997.12.2)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물건조서 변경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다. 사업기간 : 변경없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모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모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번3동 186-4	건물	스레트/세멘블럭조	8㎡	김예희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15-2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번3동 186-4	건물	스레트/세멘블럭조	8㎡	김예희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15-2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번3동 186-2	담장	합석	1식	김예희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15-2				번3동 186-4	담장	1식		김예희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15-2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 토목치수과(☎ 901-6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고시 제2003-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85-635호('85. 9.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되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3-45호(2003. 6.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미아5동 46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치수과(☎ 901-6216) 및 건설관리과(☎ 901-62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결정고시	지형도면 승인	비고
당초	강북구 미아동 460-107~458-4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미아5동 46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폭 20m 연장 220m	서울특별시 고시 제85-635호 (198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85-635호 (1985.9.24)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물건조서 변경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다. 사업기간 : 변경없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격	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격	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 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 용	
-	-	-	-	-	-	-	-	-	미아5동 458-8	담장	블록조	1식	대한예수교장 로회신성교회	강북구 미아동 458-8				
-	-	-	-	-	-	-	-	-	미아5동 65-15	담장, 화단, 수목	벽돌조 잡목	1식	이재희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19-1309	중소기업 은행	중구 을지로 2가 50 (풍남동지점)	근저당 권설정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 토목치수과(☎ 901-6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고시 제2003-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도로))
결정(변경)및지형도면작성·승인**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같은법부칙 제20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조서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과(☎ 02-2650-33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 가. 결정 및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신월1동 226-9	0	증) 1,266	1,266	-	

-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0	국지도로 (구도)	225	신정3동 산157-1	신정3동 805-5	일반 도로		-	
변경 (폐지)	소로	2		8	국지도로 (구도)	120	신정7동 177-20	신정7동 산94(향림사)	일반 도로		'72. 1. 7	

- 라. 관계도면 : 생략(양천구 도시주택과 비치도면과 같음)

- 제3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 가. 변경결정의 취지 : 지하철9호선 904 정거장 사업계획에 학교용지가 일부 저촉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학교부지를 일부해제임.

◎강서구고시 제2003-59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
승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82. 5.19)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504호('88. 6.10)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변경

- 시설명 : 학교
- 시설의세분 : 초등학교
- 위치 : 강서구 방화동 238-1
- 면적
 - 기정 : 16,539㎡
 - 변경 : 감)251㎡
 - 변경후 : 16,288㎡
- 최초결정일 : '82. 5.19
- 비고 : 일부해제 감)251㎡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정비과(☎ 2600-6384~7)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공무부(☎ 3707-8478~9) 비치도면과 같음.

◎ 구로구고시 제2003-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6호(73.12. 3)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되고 구로구고시 제1998-113호('98. 8.10)와 구로구고시제2001-116(2001.12.3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3-177호(2003. 3.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궁동 197~오류1동 8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을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교통국 토목과(☎ 860-3127), 건설관리과(☎ 860-225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 시행지 : 구로구 궁동 197-59 ~ 197-28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궁동197 ~ 오류1동 81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폭 6m, 연장 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길 340 (구로본동 435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궁동 197 ~ 오류1동 81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궁동 197-59	대	56	56	박영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07번지 현대(아)109-103호				197-13
2	궁동 197-60	대	114	114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궁동 197-28	담 장	합석	1식	양인상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81-111호			

영 업 권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상호명	물건의종류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성명	주 소	
1	궁동 197-28	경인고물상	영업권	양인상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81-111호	

◎구로구고시 제2003-3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자지정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2-390호(2002.11. 5)로 구로역주변특별계획구역(애경백화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내용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구로동 501-16호~4호간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

설사업(도로)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애경백화점부지 도로조성사업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동 501-16 ~ 501-4
- 사업규모 : 폭=15m, 연장=60m
- 시설결정고시일 : 서울시고시제390호 ('02.11. 5)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 애경백화점부지 도로조성 사업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큰길 대1-51 ~ 구로동 501-5
- 사업규모 : 폭=10m 연장=160m
- 시설결정고시일 : 서울시고시제390호 ('02.11. 5)
-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에이알디홀딩스(주) 대표 채형석
 -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1
- 다.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시행자지정고시일로부터 2003. 6.30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토목과 (☎ 860-24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고시 제2003-47호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따른 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44호(2003. 6. 10)로 구역변경지정된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860-296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구로구청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고척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변경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	구로구 고척동 1번지일대	55,508	사업계획 층수변경 택지2 위치변경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도시계획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5,508	100	
계		55,508	100	
택 지	소 계	44,018	79.30	
	택 지 1	42,563	76.68	아파트부지
	택 지 2	225	0.40	근린생활시설부지 (위치변경)
	택 지 3	760	1.37	동사무소부지
	택 지 4	470	0.85	파출소부지
공 공 시 설	소 계	11,490	20.70	
	도 로	5,930	10.68	
	공 원	5,560	10.02	

라.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주된 용도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기정	고척제2 주택재개발구역	55,508	택지1	42,563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부리시설	30%이하	160%이하	24.50m이하 8층이하 (평균7층이하)	
			택지2	225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함.	
			택지3	760						
			택지4	470						
변경	고척제2 주택재개발구역	55,508	택지1	42,563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부리시설	22%이하	160%이하	37.0m이하 12층이하 (9~12층)	
			택지2	225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함. 택지2 위치변경	
			택지3	760						
			택지4	47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 ○ 전용면적 60㎡이하 : 총 건설세대수의 40%이상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타구역 입주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에 준함					
바. 시행지구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사. 사업시행예정시기 : 변경없음 아. 관계도면 : 생략(비치도면과 같음)										
◎구로구고시 제2003-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자지정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0호(2002.11.5)로 구로역주변 특별계획구역(애경백화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내용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3-37호로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였으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에이알디홀딩스(주)로부터 도로선형에 대한 협의와 구로 독서실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일정 등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신청기일 연장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의 시행자 지정 변경(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연장)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개요(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 애경백화점부지 도로조성 사업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동 501-16 ~ 구로동501-4

○사업규모 : 폭=15m 연장=60m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 애경백화점부지 도로조성 사업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큰길 대1-51~ 구로동 501-5

○사업규모 : 폭=10m 연장=160m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에이알디홀딩스(주) 대표 채형석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1

다.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당초 : 사업시행자지정 고시일로부터 2003. 6.30

○변경 : 시행자지정 고시일로부터 2003. 8.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토목과 (☎ 860-24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고시 제2003-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

1.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가. 상호 : 소산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 박형근)

건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병순

나. 주소 : 금천구 시흥5동 929번지33호 외2필지 소산연립 C동201호 금천구 시흥동 940번지6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929번지33호외2필지

나. 대지 면적 : 2,152.0㎡

다. 건축연면적 : 6,657.38㎡

라.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9층, 아파트1동 48세대 및 부대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03. 6. ~ 2004. 9.

5. 의제사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제8호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

7. 본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청 주택과(☎ 890-2380~2) 또는 금천구 시흥5동 929번지33호 소산연립재건축조합(☎ 808-77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고시 제2003-37호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447호('89. 8. 4)로 시설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57호('90. 3. 5)호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영등포구 공고 제2003-284호(2003. 6. 5)로 실시계획공람공고된 영등포구 영등포동422, 423번지일대 경부제4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 88조 및 동법제91조 그리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7조 및 동법시행령제100조 규정에의거 아

<p>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경부제4시설 녹지)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6월 30일 영 등 포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영등포구 영등 포동 422,423번지(38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 시행 ○사업의 명칭 : 영등포동422,423번지 일대 녹지조성</p> <p>다. 사업의 규모 : 녹지조성 1,401㎡</p> <p>라. 시행자의 성명,주소 :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p> <p>마.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 2003. 6 ~ 2006.12.</p> <p>바. 수용또는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자 주소,지번,지목 및 이해관계인조서 - 따로붙임</p>	
--	--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현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소계		5						
1-1	영등포동 422-59	대 (도로)	1/3		영등포동418-31	문정근			
1-2	“	“	1/3		영등포동3가422-26	이만성			
1-3	“	“	1/3		영등포동 426	이길우			
2	소계		7						
2-1	영등포동 422-60	대 (도로)	1/3		영등포동418-31	이정근			
2-2	“	“	1/3		영등포동3가422-26	이만성			
2-3	“	“	1/3		영등포동 426	이길우			
3	영등포동 422-71	대 (도로)	19		구로구 구로동 837-14	이정녀 외21인			
4	영등포동 422-62	소계	87		구로구 구로동 837-14	이정녀 외21인			
		대	50						
		대 (도로)	37						
5	영등포동 422-72	소계	34		“	이정녀 외21인			
		대	6						
		대 (도로)	28						
6	영등포동 422-73	소계	9		구로구 구로동 837-14	이정녀 외21인			
		대	6						
		대 (도로)	3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현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7	영등포동 422-50	소계	45		송파구 거여동136-101	박영호								
		대	42											
		대(도로)	3											
8	영등포동 422-61	소계	3		구로구 구로동 837-14	이정녀외 20인								
		대(지구외)	2											
		대(지구내)	1											
9	영등포동 423-39	소계	63											
		대	61											
		대(도로)	2											
		대	16분의11							동대문구 망우동403-65	김애기			
			16분의3							마포구 서교동446-56	이연섭	중랑구 면목동1-38	임효순	청구권가등기
			16분의2							동대문구 망우동403-65	이보섭			
10	영등포동 423-70	대	1		서울 중구 저동95-1	강영자								
11	영등포동 423-65	소계	43											
		대	42											
		대(도로)	1											
		대	16분의11							동대문구 망우동403-65	김애기			
			16분의3							마포구 서교동446-56	이연섭	중랑구 면목동1-38	임효순	청구권가등기
			16분의2							동대문구 망우동403-65	이보섭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현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2		소계	112							
		대	104							
		대(도로)	8							
	영등포동 423-18	대	19분의10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228동 206호	이중희			
			19분의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7 무원마을 501동1306호	이중철	고양.덕양.행신767무 원마을501동1306호	이범영	청구권기등기
			19분의1			용산구 한남동 509 디동 102호	이정란			
			19분의4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2-2 프라자아파트 206동 1003	이중대	양천 목동 901 목동아파트 134동304호	김영일	청구권기등기
13	영등포동 423-116	소계	81		423	박명성	금천구 독산동 951 (독산지소)	관악농협 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공동담보423-54.4 23-116토지및건물)	
		대	70							
		대(지구외)	1							
		대(도로)	10							
14	영등포동 423-45	소계	26		영등포동 423	조남석				
		대	21							
		대(도로)	5							
15	영등포동 423-114	소계	89		영등포동 423-19	유성기				
		대	69							
		대(도로)	20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현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6	소계		4						
		대(지구외로 제외)	36						
		대(도로)	4						
	영등포동 423-92	대	13.4분지13		국(재정경제부)				
			13.4분지0.4		신길동253-193	김규오			
17	영등포동 423-64	소계	93		영등포동 423	심천식			
		대	91						
		대(도로)	2						
18	영등포동 422-42	대	23		문래동3가 76-1 국화아파트 2동106호	김정자			
19	영등포동 422-10	대	35		영등포동 426번지	김낙량			
20	영등포동 422-9	대	23		문래동2가 13-2	김정자			
21	영등포동 422-34	대	20		영등포구 영등포동 426	정인순			
22	영등포동 422-27	대	23		노원구 상계동 1276 청암아파트 202-1006	신규창			
23	영등포동 422-49	대	13		영등포동 422-49	김월선		영등포 구	압류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도로)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24	영등포동 422-47	대	20		영등포동 592-45	임규업			
25	영등포동 422-26	대	33		영등포동 592-45	임규업			
26	영등포동 423-122	대	37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128	안상호			
27	영등포동 423-120	대	2		영등포동423-63	서홍석	서울 종로구 공평동100	제일 은행	근저당권설정 (공동담보423-63토 지, 건물및423-120 토지
28	영등포동 423-74	대	96						
28-1	"	"	361/551		군포시 금정동 727-14 202호	박영광			
28-2	"	"	60/551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122동802호	이중길			
28-3	"	"	40/55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7 무원마을 501동1306호	이중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67 무원마을 501동1306호	이범영	이전창구권 가등기
28-4	"	"	10/551		용산구 한남동 509 디동 102호	이정란			
28-5	"	"	40/551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228동206호	이중희			
28-6	"	"	40/55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2-2 프라자아파트 206동1003	이중대	양천구 목동901 목동아파트 134동304호	김영일	이전창구권 가등기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29	영등포동 423-72	대	30						
29-1	“	“	1/2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11	김애순			
29-2	“	“	1/2		영등포구 양평동3가 79현대아파트301동204호	양진호			
30	영등포동 423-78	대	33						
30-1	“	“	1/2		양천구 신정동 311-11호	김애순	영등포구 양평동5가86	해태제과공 업주식회사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지방법원말소제기중)
30-2	“	“	1/2		양평동3가 79 현대아파트 301동204호	양진호	“	“	
31	영등포동 423-118	대	124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960-6 문문2차아파트 202동 2502호	최규익	서울 중구 회현동1가203	우리은행	근저당권설정 〈공동담보423-46외1필지 김영준지분〉
32	영등포동 423-69	대	42		서울 중구 저동 1가95-1	강영자			
33	영등포동 423-73	대	36		영등포동 3가423	정규웅			
34	영등포동 423-62	대	10		영등포동 3가 423	정규웅			
35	영등포동 423-115	대	45		영등포동423	조남석			
36	영등포동 423-54	대	12		영등포동423	박명성	금천구 독산동951	관악농협협 동조합	근저당권설정(423-54,423 -116토지및건물)
37	영등포동 423-46	대	12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960-6 문문2차아파트 202동2502호	최규익	중구 회현동1가203	우리은행	근저당설정 423-46외1필지
38	영등포동 423-53	대	11		영등포동 423	조남석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규격	건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부상	저축 면적	무허가 면 적	가건물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영등포동 422-62	주택	목조외집		16	-	2	영등포동422-45	박중훈			
2	영등포동 422-28	주택	목조외집		32	-	3	영등포동422-28	이중숙			
3	영등포동 422-46	주택	목조외집		18	-	3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46	김준덕			
4	영등포동 422-46	주택	목조외집		23	-	-	영등포동 422-46	김기훈			
5	영등포동 422-42 422-9	주택	목조외집		52 (1층)	-	-	서울.문래동2가13-2	김정자			
					55 (2층)	-	-					
6	영등포동 422-34 422-41	주택	목조외집		29	-	2	영등포동422-34 " 422-41	정안순			
7	영등포동 422-40	주택	목조외집		20	-	-	영등포동 422-40	김옥란			
8	영등포동 422-50	주택	목조외집		37	-	-	송파구 거여동 136-101	박영호			
9	영등포동 423-93	주택	목조외집		198	-	12 (2개소)	영등포동 423-93	임명희			
10	영등포동 422-26	주택	목조외집		47(1층)	-	3	영등포동592-45	임규임			
					45(2층)	-						
					45(3층)	-						
					9(4층)	-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규격	건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부상	저층 면적	무허가 면적	가건물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1	영등포동 422-27 422-48	주택	목조외집		17(1층) 17(2층)	-	11	노원구 상계동 1276 청암아파트 202동 1006호	신규창			
12	영등포동 422-49	주택	목조외집		18(1층) 18(2층)	-	6	영등포동422-49	김월선			
13	영등포동 422-10	주택	목조외집		57(1층)	-	-	영등포동426	김낙량			
					57(2층)	-						
14	영등포동 423-122	주택	목조외집		56	-	-	영등포동6가128	안상호			
15	영등포동 423-84	주택	목조외집		60	-		강서구 내발산동 696-25	정수용			
16	영등포동 423-39	주택	목조외집		86(1층)	-	2	동대문구 망우동403-65	김애기 16분의11			
					86(2층)	-		중랑구 면목동1-38	임효순 16분의3			
					86(3층)	-		동대문구 망우동403-65	이보섭 16분의2			
					27(3층)	-						
17	영등포동 423-64	주택	목조외집	87	-	2	영등포동423-64	신구현 13분의3	손창수	가압류	가압류 (윤상옥, 윤병규, 박노현)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량리374	심우분 13분의2				
							구로공단213-2 우신빌라4-207	심우명 13분의2				
							영등포동423-64	심우진 13분의2				
							강서구 화곡동 993-23 연희빌라나-202	심순자 13분의2	강서 세무서	압류		
							영등포동423-64	심우출 13분의2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규격	건물(㎡)			가건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부상	저축 면적	무허가 면적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8	영등포동 423-18	주택	목조외집		38(1층)	-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7 무원마을 501동1306호	이중철 19분의4			
					17(2층)	-		용산구 한남동 509다동102호	이정란 19분의1			
					65	-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228동 206호	이중희 19분의10			
					10(1층)	-		강서구 화곡동 주공2아파트 28동	이중일 19분의4			
					8(2층)	-		405호				
19	영등포동 423-74	주택	목조외집		72	-	6 (2개소)	군포시 금정동 727-14번지 202호	박만석			
20	영등포동 423-72 423-78	주택	목조외집		57	-	1	양천구 신정동311-11	김애순 2분지1			
								영등포구 양평동3가 79번지 현대아파트 301동204호	양진호 2분지1			
21	영등포동 423-121	주택	목조외집		36	-	3	영등포동 423-121	하재홍			
22	영등포동 423-69	주택	목조외집		47(1층)	-		중구저동1가 95-1	강영자			
					47(2층)	-						
23	영등포동 423-73	주택	목조외집		52(1층)	-	-	영등포동 423-73	정규용			
					51(2층)	-						
24	영등포동 423-63	주택	목조외집		26	-	-	영등포동 423-63	서홍석	서울 종로구 공평동100	제일 은행	근저당권설정(423-63 토지, 건물 및 동소423-120토지
										"	"	근저당권설정(423-63,4 23-120토지)
										서초구 우면동 63 우면주공앞트 104-1409	김종이	근저당권설정(423-63,4 23-120토지)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규격	건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부상	저층 면적	무허가 면적	가건물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25	영등포동 423-118 423-46	주택	목조 외집	101	-	7 (2개소)	안산시 단원구 와동799-18	김영준 9분지8	동대문구 범일동 825-3	동남 은행	가압류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상가 25동101호	어구선	가압류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 기금	가압류	
									안산시 본오동 879-15	안병윤	근저당설정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 은행	근저당설정	
영등포동 423-46	신현순 9분지1	경기은행 (영등포지점)	근저당권설정									
26	영등포동 423-116	주택	목조 외집	70 (1층)	-	5 (2개소)	영등포동 423	박명성	금천구 독산동951	관악농협 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공공담보423- 54,423-116>	
				70 (2층)	-							
27	영등포동 423-45	주택	목조 외집	54 (1층)	-	4	영등포동 423	조남석				
				54 (2층)	-							
28	영등포동 423-114	자동차 수리점	조립식 경량판넬		66	-	-	영등포동 423-114	유성기			

영 업 권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상호	업종	소 유 자	
				주 소	성명
1	영등포동 423-39 탱크편의점	탱크편의점	슈퍼	양천구 신정동 양천앞트 108-1303호 (2652-0651) 이평단	
2	영등포동423-39	삼양여관	숙박업	영등포동423-39 (2675-2538) 김애기	
3	영등포동423-64	영광여인숙	숙박업	영등포동423-64 (2678-8904) 신구현	
4	영등포동423-18	안락여관	숙박업	영등포동423-18 (2678-5274) 유덕자	
5	영등포동423-73	강경여관	숙박업	영등포동423-73 (2633-5247) 정규용	
6	영등포동423-116	실내포장마차	음식점	영등포동423-116 (2678-5930) 송용복	
7	영등포동423-45	영진여인숙	숙박업	영등포동423-45 (2678-5346) 조남석	
8	영등포동423-114	대성카공업사 (조립식경량판넬)	자동차정비	영등포동423-114 (2635-5972,2678-4852) 유성기	
9	영등포동423-78	금곡여인숙	숙박업	영등포동423-78 (2671-1646) 김순덕	

⊙동작구고시 제2003-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가. 대방전철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황 철(동작구 대방동 97-1)
 - 나. (주)신일 대표 최완근(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31-1)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위치 : 동작구 대방동 97-1호 외4필지
 - 나. 사업 면적 및 규모

○아파트

- 사업규모
 - 지하층 : 2
 - 지상층 : 7~19
 - 동 : 2
 - 세대수 : 132
- 대지면적 : 3,661.60㎡
- 건축면적 : 1,000.0046㎡
- 연면적 : 14,565.6364㎡
- 사업비 : 42,752,000천원
- 4. 사업시행기간 : 2003.11. ~ 2006. 8.
- 5.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공동구)
 - 도시계획시설 결정(공동구) 및 지형도면 조서
 - 규모
 - 높이 : 2.5m
 - 폭 : 1.76m
 - 길이 : 8m
 - 시설명 : 공동구
 - 면적 : 14.08㎡
 - 사업위치 : 대방동 87-6
- 2) 도시계획사업(공동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동구)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공동구
 - 사업명 : 대방전철(아)공동구 시설
 - 위치 : 동작구 대방동 87-6
 - 사업규모
 - 폭(B)=1.76m
 - 높이(H)=2.5m
 - 연장(L)=8m
 - 사업시행자
 - 대방전철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황철(동작구 대방동 97-1)
 - (주)신일 대표 최완근(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31-1)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주택건설사업 착공일에서 사용검사일
 - 토지등 수용 없음
 - 나.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사도법제 4조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 라. 기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의제처리 되는 사항
- 6. 기타 및 도면 :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주택과(☎ 820-9776)에 비치

◎동작구고시 제2003-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3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 1.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 사업주체
 - 가. 대방시범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찬중(동작구 대방동 343-1호)
 - 나. 경남기업(주) 대표 조병수(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위치 : 동작구 대방동 343-1호 외3필지
 - 나. 사업 면적 및 규모
 - 아파트
 - 사업규모
 - 지하층 : 2
 - 지상층 : 10~15
 - 동 : 2
 - 세대수 : 163
 - 대지면적 : 6,863.800㎡
 - 건축면적 : 1,647.434㎡
 - 연면적 : 25,288.520㎡
 - 사업비 : 57,646,895천원
- 4. 사업시행기간 : 2003. 6. ~ 2005. 12.
- 5.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가.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사도법제 4조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 다. 기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의제처리 되는 사항
- 6. 사업계획승인 도면 : 생략(동작구청 주택과(☎ 820-9776)에 비치)

◎관악구고시 제2003-57호

봉천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1. 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32('93. 8.11)로 사업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1994-36호('94.10.18)로 사업시행인가와 같은고시 제1997-42(1997. 6.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봉천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관악구청 주택과(☎ 880-38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봉천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및 면적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 3) 시행면적 : 264,225.4m²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봉천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 정 성 태)
서울 관악구 봉천동 911-28(석포 B/D 3층)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1997년 6월 19일
-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 : m²)

구분	계	택지1	택지2	택지3	택지4	택지5	도로	공원	공공의청사	학교용지
변경전	264,581	139,865	30,361	1,089	730	331	31,487	47,744	1,265	11,709
변경후	264,225.4	138,186.7	29,889.4	1,140	914.1	331	31,457.1	48,925.2	1,265	12,116.9
증 감	감355.6	감1,678.3	감471.6	증51	증184.1	-	감29.9	증1,181.2	-	증407.9

(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총 계	택지1(분양아파트)	택지2(임대아파트)
연면적(m ²)	변경없음	649,134.75	531,139.83	117,994.92
건폐율(%)	변경전	17.38	16.71	20.48
	변경후	17.61	16.91	20.80
	증 감	증0.23	증0.20	증0.32
용적율(%)	변경전	268.69	264.38	288.54
	변경후	272.13	267.59	293.09
	증 감	증3.44	증3.21	증4.55

(다) 일반분양의 규모 및 보류시설의 변경사항

- 보류시설 평형조정 따른 일반분양 및 조합원분양 규모 변경
 - 일반분양 : 1,397세대→1,413세대 (증16세대)
 - 조합원 분양 : 2,084세대→2,068세대 (감16세대)
- 변경내역

공급면적(㎡)	세대수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보류시설		임대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계		2,084	2,068	1,397	1,413	63	63	1,843	1,843
32.76(14평)	1,843	-	-	-	-	-	-	1,843	1,843
59.83(25A평)	324	-	-	324	324	-	-	-	-
59.85(25B평)	324	-	-	319	324	5	-	-	-
60.00(24C평)	44	20	20	24	24	-	-	-	-
60.00(24D평)	352	80	74	272	275	-	3	-	-
84.96(32평)	60	60	60	-	-	-	-	-	-
84.96(33평)	1,408	1,408	1,389	-	1	-	18	-	-
102.00(38평)	248	124	123	111	116	13	9	-	-
114.75(42평)	784	392	402	347	349	45	33	-	-

(라) 기타 변경사항

- 조합원 명의변경 : 944명
- 총회 결의에 의한 조합원아파트 평형조정(14세대)
 - 33평 → 24D형 : 1세대
 - 33평 → 42평 : 12세대
 - 42평 → 33평 : 1세대

◎관악구고시 제2003-60호

봉천제4-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따른
지형도면승인

1.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79호(2003. 6. 23)로 구역변경지정된 봉천제4-2주택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과(☎ 880-38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가. 주택재개발구역의 명칭 : 봉천제4-2
주택재개발구역
나. 재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봉천제4-2주택 재개발구역	관악구 봉천동 산102번지 일대	115,172	115,172	택지7(근린생활) 및 택지9(근린생활)에 공동주택 용도추가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m ²)		변 경 (m ²)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115,172	100	115,172	100	
시 설	도 로	22,813	19.80	22,813	19.80	
	공 원	11,230	9.75	11,230	9.75	
택 지	소 계	81,129		81,129		
	택 지 1	64,766	56.24	64,766	56.24	분양아파트
	택 지 2	11,961	10.39	11,961	10.39	임대아파트
	택 지 3	3,519	3.00	827	0.72	종교부지
	택 지 4	385	0.33	385	0.33	존치건물
	택 지 5	498	0.43	498	0.43	근린생활
	택 지 6	-	-	495	0.43	근린생활
	택 지 7	-	-	662	0.57	근린생활및공동주택
	택 지 8	-	-	1,058	0.92	근린생활
	택 지 9	-	-	477	0.42	근린생활및공동주택

라.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 1)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면적시설 :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
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면적(m ²)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용적율(%)	층수또는높이	용도구성
기정	택지 1	64,766	30% 이하	360% 이하	25층 이하 (75M이하)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2	11,961	30% 이하	360% 이하	25층 이하 (75M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3	3,519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 조례 적용			
	택지 4	385	존치			
	택지 5	498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 조례 적용			
변경	택지 1	64,766	30% 이하	360% 이하	25층 이하 (75M이하)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2	11,961	30% 이하	360% 이하	25층 이하 (75M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3	827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 조례 적용			
	택지 4	385	존치			
	택지 5	498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 조례 적용			
	택지 6	495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 조례 적용			
	택지 7	662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 조례 적용			
	택지 8	1,058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 조례 적용			
	택지 9	477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시·구 조례 적용			

<p>바. 시행지구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p> <p>1) 시행지구 분할계획 : 해당없음</p> <p>2)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p> <p>사. 사업시행예정시기 : 변경없음</p> <p>아. 지형도면승인도서 : 생략(지형도 승인도면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습니다.)</p> <p>◎송파구고시 제2003-40호</p> <p>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실시계획</p> <p>1. 우리구 거여동 195-1외 3필지상에 거여제2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p>	<p>은법시행령 제97조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6월 30일</p> <p style="text-align: right;">송 파 구 청 장</p> <p>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95번지 1,3,5,6호(4필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청사) ○사업의 명칭 : 거여제2동 복합청사 신축
--	--

3) 사업시행 규모 ○부지면적 : 1,305㎡ ○건축면적 : 405㎡ ○거축연면적 : 2,044㎡(지하1층, 지상4층)		○성명 : 송파구청장			
4)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5		5) 사업의 시행기간 : 인가일로 부터 ~ 2004.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의 명세			
소재지	지목및면적	건물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비고
거여동195-3	대237㎡	327.6㎡(지하1층,지상2층)	박홍식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95-3	
거여동195-5	대 184㎡	171.28㎡ (지하1층,지상2층)	건물:박천원 토지:박천원 토지:장정숙	박천원:서울시 송파구 거여동205-6 장정숙:서울시 송파구 거여동208-51	
거여동195-6	도로 14㎡		김중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26-14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공동담보(토지,건물)		
박홍식	105백만원	양주축산업협동조합(화계지점)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95-3		
	35백만원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15			
박천원	130백만원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15-4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95-5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자치행정과(☎410-3811~4)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6 올림피아빌딩 602호)		
◎강동구고시 제2003-50호 유로노인복지주택사업계획승인 유로노인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9-2, 81-1, 79-12, 80-6 나. 대지면적 : 2,441.00㎡ 다. 연면적 : 7,701.26㎡ 라.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9~10층, 유로노인복지주택1개동 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3년 6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4. 사업시행기간 : 2003. 7 ~ 2005. 5 5. 설계도서 : 생략 6. 기타 의제처리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제8호		
1. 사업명 : 유로노인복지주택사업 2. 사업주체 : (주)글로벌랜드이앤티 대표이사 최기홍					

구 공 고

◎중구공고 제2003-240호

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처리하였기 동 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중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기계설비공사업 (중구03-12-04)
- 업체명 : 동우공영(주)
- 소재지 : 중구 중림동 10-3
- 대표자 : 김영남
- 법인등록번호 : 110111-0228191
- 등록일자 : 2003. 6.23

◎용산구공고 제2003-242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처리 하였기에 동 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 등록처리 내역
 - 업종 : 난방시공업 제2종
 - 등록번호 : 용산 03-28-2-1
 - 등록연월일 : 2003. 6.24
 - 상호 : 한남건축 종합인테리어
 - 대표자성명 : 고배산
 - 주민등록번호 : 561215-*****
 - 영업소재지 :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954

◎용산구공고 제2003-243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처리 하였기에 동 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 등록처리 내역
 - 업종 : 난방시공업 제2종
 - 등록번호 : 용산 03-28-2-2
 - 등록연월일 : 2003. 6.24
 - 상호 : 금강종합설비
 - 대표자성명 : 황정철
 - 주민등록번호 : 660301-*****
 - 영업소재지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49-15

◎광진구공고 제2003-243호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등록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 상호 : 성진설비
- 대표자 : 조준형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04-1
- 등록업종 : 난방시공업 제2종
- 등록번호 : 광진-03-28-2-0010
- 등록일자 : 2003년 6월 23일

◎중랑구공고 제2003-330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기에 동

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중 량 구 청 장

-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 수리 내역
 - 업종(등록번호)
 - 난방시공업제2종(중량03-28-02-11)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중량03-27-3-07)
 - 상호 : 태영설비
 - 대표자 : 조명희
 - 영업소재지 :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 340-11
 - 처리구분 : 2003. 6.23 신규등록

◎강북구공고 제2003-276호

건설업(전문)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전문) 등록을 처리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1. 등록년월일 : 2003년 6월 24일
2. 등록번호 : 강북-03-27-03-07
3. 업종 : 가스시공업3종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동 8-331
5. 상호 : 상우종합설비
6. 대표자 : 조영길

◎도봉구공고 제2003-245호

건설업체(전문)신규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신규등록을 처리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 신규등록내역
 -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 등록번호 : 도봉-03-12-01
 - 상호 : 제중설비(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82327
 - 대표자 : 김상춘
 - 소재 지(전화번호) : 도봉구 도봉1동 569-1(☎ 3492-0494)
 - 등록일자 : 2003. 6.25

◎노원구공고 제2003-236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의 수리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 상호 : 뉴택산업(주)
- 대표자 : 남기태
-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등록번호 : 노원00-27-1-9
- 영업소재지 : 노원구 상계동 1019-57 연호빌딩 4층
- 수리일 : 2003. 6.24

◎은평구공고 제2003-35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된 증산동 6의 5~산1의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인가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합니다.
2. 본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 공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된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
평구 증산동 131의39~증산동 132의
3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 증산동 6의5~산1의1
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 도로개설 폭6m, 연장
120m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1)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2)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로부터 ~ 2004.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
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
리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주소·성명 : 별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 의함

자.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
목과

차.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토목과
(☎ 02-350-3527)로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증산동 6의5 ~ 산1의 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증산동 131-38	도	704	347	도	이한갑	은평구 응암동386-15				
2	증산동 131-39	대	245	46	대	이남세	은평구 증산동131-39	(주)에이아이리더스	강남구 역삼동 682	근저당권	
								(주)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가 9-1(용산지점)	근저당권	
3	증산동 131-41	대	175	161	대	윤영애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515	영등포세무서		압류	
4	증산동 131-59	대	205	35	대	권준섭	은평구 증산동131-59	(주)한국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36-3(응암 동지점)	근저당권	
5	증산동 131-60	대	212	38	대	정수영	은평구 증산동131-60	(주)서울신탁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무교지점)	근저당권	
								(주)서울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10-1(신답지점)	근저당권	
6	증산동 131-61	대	205	32	대	박순희	은평구 증산동131-61				
7	증산동 131-63	대	278	24	대	박공례	은평구 증산동 131-63, 203호	(주)한빛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근저당권	
						강미녀	은평구 증산동 131-63, 103호				
						조영옥	은평구 증산동 131-63, 202호	은평구청		압류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	증산동 131-63	대	278	24	대	황성희	관악구 신림동 485-25	(주)조흥은행	중구 남대문로 1가 14	근저당권	
						이안재	양천구 신정동961-27				
						박창섭	은평구 응암동242-233				
						김진석	은평구 증산동 131-63, 지층1호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이윤임	은평구 증산동 131-63, 201호				
						조정애	은평구 증산동185-17				
8	증산동 131-101	대	274	34	대	이은수	은평구 증산동131-101	농협중앙회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9	증산동 132-21	도	66	1	도	이계봉	서대문구 의주로2가 175				
						김상욱	중구 순화동 207-25				
10	증산동 132-23	대	126	4	대	김종선	은평구 증산동 132-23				
11	증산동 132-38	대	126	32	대	신효숙	은평구 증산동 132-38				
12	증산동 133-4	대	83	4	대	조태용	강동구 길동 414-5				
						이찬문	은평구 증산동 133-4				
						김진섭	은평구 증산동 133-5				
13	증산동 133-5	대	86	10	대	안수경	동작구 상도동 59-7 우천빌라 202호				
						유명준	은평구 증산동 133-6				
						유천일	은평구 증산동 133-8				
14	증산동 133-6	대	86	1	대	이재소	광진구 구의동 220-60 양곡빌라 102호				
						김용구	은평구 증산동 133-7				
						한진석	은평구 증산동 133-11				
15	증산동 133-7	대	102	25	대	고두례	은평구 증산동 133-4세진빌라 404호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증산동 6의5 ~ 산1의 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증산동 131-39	건물 담장 기타	스래브/블럭 세멘브럭(h=2.2m) 수도개량기 수목(은행나무외10종)	17㎡ 16m 1식 20주	주택 담장	이남세	은평구 증산동 131-39	
2	증산동 131-59	건물 가건물 담장 대문 차고문 기타	세멘브럭 천막 적벽돌(h=2.1m) 철재 샷다 수도개량기, 정화조,	2㎡ 20㎡ 3m 1식 1식 1식	화장실 창고 담장 대문 차고문	권준섭	은평구 증산동 131-59	
3	증산동 131-60	담장 대문 기타	세멘브럭(h=1.8m) 철재 수도개량기, 수목(전나무외 4종)	4m 1식 1식 9주	담장 대문	정수영	은평구 증산동 131-60	
4	증산동 131-61	대문 차고문 기타	철재 샷다 수도개량기 수목	1식 1식 1식 1주	대문 차고문	박순희	은평구 증산동 131-61	
5	증산동 131-101	대문 차고문 기타	철재 샷다 수도개량기	1식 1식 1식	대문 차고문	이은수	은평구 증산동 131-101	
6	증산동 132-20	건물 대문 담장 기타	세멘브럭 철재 세멘브럭 수목(전나무)	4㎡ 1식 6m 4주	화장실 대문 담장	김은숙	은평구 증산동 132-20	
7	증산동 132-38	대문 담장 기타	철재 적벽돌(h=1.6m), 세멘브럭 수목(전나무외 3종)	1식 12m 7주	대문 담장	신효숙	은평구 증산동 132-38	
8	증산동 131-41	주택	세멘브럭	13㎡	주택	서정섭	은평구 증산동 132-41호	
9	증산동 133-4,5,6,7	담장	세멘브럭(h=1.5m)	22m	담장	유명준 외 8인	은평구 증산동 133-6	

◎은평구공고 제2003-369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공람

1.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3-25호(2003. 5. 9)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된 신사동 193-1 일대의 지하 주차장건설과 관련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인가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관계도서를 은평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합니다.
2. 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된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미수령자는 이 공고를 갈음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3-1일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 사업의 명칭 : 서신초교 지하공동주차장

다. 사업의 규모 : 2,496㎡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4. 8.30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350-1603~4)로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서신초교 지하 공동주차장건설

일련 번호	소재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은평구 신사동 193-1(지하)	전	486	348	학교운동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2	은평구 신사동 193-22(지하)		23	23						
3	은평구 신사동 산 81-1(지하)	임야	1,688	812						
4	은평구 신사동 산 81(지하)	임야	1,882	1,052						
5	은평구 신사동 194(지하)	전	126	107						
6	은평구 신사동 195-3(지하)	임야	58	58						
7	은평구 신사동 193-9(지상)	대	96	96	주택 및 상가	조남술	충남·부여·세도면 귀덕리 104	(주)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 가9-1	근저당

물 건 조 서

○사업명 : 서신초교 지하 공동주차장건설

소재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은평구 신사2동 193-9	건물 (1층:근생 2층:주택)	벽돌조 슬래브 ·지1 : 16.75 ·1층 : 47.74 ·2층 : 47.74	112.23㎡	1층: 부동산, 쌀가게, 미용실 2층: 주택	조형연	좌 동	(주)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 가9-1	근저당
	도시가스계량기		1식						
	전기계량기		4식						
	수도계량기		2식						
	기름보일러		1식						
	전기보일러		1식						
	정화조		1식						

영 업 권 조 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용 도	면적 및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1	은평·신사동 193-9	영업권	굿모닝 부동산	부동산	20㎡ 1개소	조형연	은평·신사동 193-9
2	“	“	굿모닝 쌀상회	쌀가게	20㎡ 1개소	조남술	충남·부여군 세도면 귀덕리 104
3	“	“	머리할래	미용실	20㎡ 1개소	이도움	은평·응암동 176-13

◎마포구공고 제2003-253호

전문건설업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처리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마 포 구 청 장

○등록처리 내역

- 등록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마포03-01-06
- 상호 : 영화아이엔시(주)
- 대표자 : 이제혁
- 소재지 : 마포구 동교동 204-36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58500
- 전화번호 : 3141-7805
- 등록년월일 : 2003. 6.18

◎구로구공고 제2003-460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내역

- 등록일자 : 2003. 6.24
- 업종 : 철물공사업
- 등록번호 : 구로-03-11-06
- 상호 : (주)현대후랩
- 법인등록번호 : 110111-1662413
- 대표자 : 이춘천
- 소재지 : 고척동 181-6
- 연락처 : 2686-7087

◎영등포구공고 제2003-334호

도시관리계획공람

1. 건설부고시제98호('79. 3.29)로 결정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611번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과 신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내용중 누락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같은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hms2526@ydp.seoul.kr)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영 등 포 구 청 장

3.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결정(안)

○변경

- 시설명 : 유수지
- 시설의세분 : 유수시설(도림1유수지)
- 위치 : 대림3동 611
- 면적
 - 기정 : 25,200.5㎡
 - 변경 : 감3,700㎡
 - 변경후 : 21,500.5㎡
- 최초결정일 : 건설부고시제98호 '79. 3.29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신설

- 시설명 :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대림3동 611 - 면적 : 3,700㎡ - 비고 (입체적 결정 내용) 도시계획 결정의 공간적 범위 : 지상부 <p>다. 신길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등급 : 소로 류별 : 3 번호 : 1 폭원 : 6m • 기능 : 국지도로 • 연장 : 97m • 기점 : 신길동 4902-16 • 종점 : 신길동 4902-5 	<p>라. 공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5일간</p> <p>마.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 2670-3385~6)</p> <p>바.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p> <p>◎관악구공고 제2003-263호</p> <p>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p> <p>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신고수리하고 동법시행령제10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6월 30일 관 악 구 청 장</p> <p>○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 수리내역</p>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수리일
대경피엠씨(주)	정덕성	봉천동 1660-6	기계설비 영등포-00-12-07	2003.06.24
(주)만든산업건설	김거부	봉천4동 866-1 성우빌딩402호	토공 강남-00-02-45 철근콘크리트 강남-00-10-43	2003.06.24
송정개발(주)	임종성	신림10동 309-7	철근콘크리트 송파-00-10-49 토공 송파-00-02-66 상하수도설비 관악-00-13-03 비계구조물해체 관악-00-07-08 포장 관악-01-16-02	2003.06.24

◎관악구공고 제2003-265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신고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수리내역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수리일자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3-27-3-214호	93.1.4	2003.6.23	보림설비공사	김필석	신림8동 549-3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1-28-1-310호	91.2.8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01-27-3-8호	01.5.3	2003.6.23	세진종합설비	소재운	신림5동 1412-1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00-28-1-94호	00.1.26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00-27-3-95호	00.6.8	2003.6.23	대흥설비	김운용	신림13동 651-32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8-28-2-41호	98.1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9-27-3-62호	99.11.15	2003.6.23	현대종합설비	박주환	봉천1동 968-22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9-28-2-75호	99.6.22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3-28-2-415호	93.5.241	2003.6.23	가정종합설비	송창돈	신림4동 469-4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3-27-3-206호	93.1.4	2003.6.23	우창설비	김영두	봉천1동 712-28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1-28-1-322호	91.4.8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8-28-2-36호	98.11.13	2003.6.23	두산설비	김지수	봉천11동 206-6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80-28-1-33호	80.7.2	2003.6.23	진흥설비	김영식	봉천10동 10-2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8-28-2-17호	98.7.4	2003.6.23	현대설비	김춘성	신림4동 492-3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수리일자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2-27-3-181호	92.11.17	2003.6.23	우창엔지니어링	조준상	신림2동 110-61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1-28-1-345호	91.12.26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9-27-3-35호	99.4.8	2003.6.23	경안설비	김승기	봉천1동 670-63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8-28-2-12호	98.4.23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2-27-3-172호	92.10.29	2003.6.23	광신설비	조영태	봉천본동 961-13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0-28-1-306호	90.12.4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3-27-3-260호	93.5.1	2003.6.23	삼성설비	김병남	봉천1동 963-20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81-28-1-36호	81.5.1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3-27-3-207호	93.2.4	2003.6.23	광성설비	황기룡	봉천11동 1634-5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1-28-1-320호	91.3.28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4-27-3-320호	94.3.31	2003.6.23	중앙엔지니어링	김진수	봉천1동 710-6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1-28-1-312호	91.2.27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9-27-3-43호	99.6.9	2003.6.23	수도설비	오창현	신림10동 320-43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8-28-2-38호	98.11.19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3-27-3-272호	93.6.9	2003.6.23	성중설비	김일곤	봉천11동 205-11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0-28-1-286호	90.6.8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2-27-3-176호	92.11.12	2003.6.23	협신설비공사	최재왕	신림8동 547-24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88-28-1-108호	88.5.20				

◎서초구공고 제2003-242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건설업등록기준 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처리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종업원수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법인(주민) 등록 번호	등 록 일 자	자본금 증자액 (채권액)
철근콘크리트 서초-03-10-17	(주)유양정보 통신 225명	한 의 현 589-3571	양재동 275	110111- 0204498	2003.6.25	18.056.015 15.056.015 (30.120)
포 장 서초-03-16-02	(주)벽운 건설 19명	조 성 일 573-0606	양재동118 봉석빌딩402	141111- 0006029	2003.6.25	700,000 200,000 (400)
토 공 서초-03-02-17	(주)대신지오엔지니어링 9명	곽 창 훈 576-5365	양재동 245-5, 6	110111- 1699151	200.6.25	200,000 (400_

◎송파구공고 제2003-231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 가. 등록일자 : 2003. 6.26
-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내역
 - 업종 및 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관리업(송파-03-29-05)
 - 업체명 : 씨에이건설(주)
 - 대표자 : 김민극
 - 소재지 : 석촌동173-5대지빌딩2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2502014

○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액 : 500,000원

◎강동구공고 제2003-184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

전문건설업 등록 자진반납에 따라 등록 말소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 등록말소 수리내역
 - 업종 및 등록번호
 - 실내건축공사업(94-서울-01-217)
 - 토공사업(강동-98-2-3)
 - 상호 : 용학건설(주)
 - 대표자 : 조용섭

- 소재지 : 강동구 성내동 455-13
- 말소사유 : 자진반납
- 등록말소일자 : 2003. 6.25

◎강동구공고 제2003-185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신고서를 수리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 등록사항신고수리 업체 : 별첨

등록기준사항 신고수리 업체 현황

신고수리일자 : 2003. 6. 25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창호공사업	92-서울-08-49	(주)삼신창호	110111-0863129	남수연	강동 상일동 471-3
철물공사업	78-서울-11-24	금창건업(주)	110111-0340185	유영록	강동 천호3동 51-1
기계설비공사업	92-서울-12-131	신화설비공업(주)	110111-0817663	장명수	강동 성내동 553-24
기계설비공사업	92-서울-12-115	(주)철원엔지니어링	110111-0860349	김진웅	강동 성내3동 407-1
기계설비공사업	92-서울-12-71	(주)광명설비	110111-0845888	박석기	강동 명일동 347-3 현대상가 209호
실내건축공사업	91-서울-01-234	럭키공사	470416-*****	김현진	강동 길동 259-3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95-제주-02-1 95-제주-10-6	상일공영(주)	110111-1720261	신상미	강동 성내동 539-3 서경빌딩 301호
창호공사업	94-서울-08-105	(주)성상공영	110111-1092321	강 식	강동 길동 386-8 404호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96-서울-18-19 96-서울-19-21	우주조경	591219-*****	박전하	강동 천호동 287-2

등록기준사항 신고수리 업체 현황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96-서울-18-20 94-서울-19-3	초림조경	570803- *****	장봉진	강동 길동 411-3 (4층)
상하수도설비공사	96-서울-13-77	동양플랜트	521001- *****	최동안	강동 성내동 320-9
미장방수공사업	강동-97-3-2	가북건설(주)	110111- 1425671	서세화	강동 성내동 112-65
상하수도공사업	강동-98-13-3	은선건설	571121- *****	이은택	강동 길동 411-5
미장방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	강동-98-3-2 강동-00-29-3	(주)이건 씨시스템	110111- 1536022	임석영	강동 성내동 542-2
비계구조물해체	강동-98-7-2	(주)타워테크 코리아	110111- 1081845	김희관	강동 명일동 312-132
실내건축공사업	강동-99-01-3	(주)고성디자인엔지 니어링	110111- 1154668	유종길	강동 둔촌동 172-1 둔촌상가 305호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	송파-98-02-02 송파-98-10-02 송파-98-13-02 송파-98-16-02 송파-99-30-04	홍용건설	561227- *****	이홍원	강동 성내동 549-4 퍼시픽빌딩 3층
실내건축공사업	강동-00-01-5	(주)강동종합 인테리어	110111- 0787923	김영산	강동 암사동 510-5
포장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성북-97-16-03 성북-97-13-5	우송건설	540730- *****	이남구	강동 길동 228-7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강남-99-18-01 강남-99-19-1	삼연조경	500420- *****	윤경자	강동 성내동 430-12 화영빌딩 406호
석공사업	송파-99-04-01	(주)정초석건	110111- 1539117	김공수	강동 길동 252-105 신영빌딩 3층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	송파-98-16-081 송파-97-13-12	청룡건설	600423- *****	이희원	강동 성내동 564-3
미장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서초-00-02-02 서초-00-05-05	코리아코팅 산업(주)	110111- 1831018	정표현	성내동 449-15
미장방수공사업 조적공사업	송파-98-03-11 송파-98-06-03	부풍건설(주)	110111- 2717382	홍종월	성내동 455-8

사업소 고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3-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삼세릉 대표이사 임익룡
- 3. 점용자의 주소 : 강남구 압구정동 378
- 4. 점용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378번지
- 5. 점용척수 : 선박 7척
- 6. 점용목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 7. 점용기간 : 2003. 6.26 ~ 2003.12.31.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3-101호

하천점용의추인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추인허가 하였기에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허가년월일 : 2003. 6.25.
- 위치 :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남단 상·하류 둔치
- 지목 : 하천
- 면적
 - 허가취소 : 7필지 11,069㎡

- 추인허가면적 : 115필지 162,666㎡
- 목적 : 농작물경작
- 허가기간 : 2002. 4.23. ~ 2003. 4.22.
- 허가받은자
 - 주소 : 강서구 공항동 2-3 해태아파트 101-301 외 34
 - 성명 : 맹봉영외 34인

사업소 공고

◎용산소방서공고 제2003-7호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

소방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용 산 소 방 서 장

- 상호 : (주)상우전력공사
- 영업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
- 대표자 : 황남백
- 주민등록번호 : 610626-*****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등록번호 : 제서울용산 2001-3호
- 등록일자 : 2001.10.19
- 행정처분사유 : 변경신고 미 이행(영업소소재지)
 - 1차 : 시정명령(2003. 3.26한)
 - 2차 : 영업정지1월(2003. 4.23~ 5.22)
- 처분의 종류 : 등록취소
- 처분일 : 2003. 7. 4
- 적용법규 : 소방법 제57조·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7조 [별표16] 제2호 마목(6)

◎성동소방서공고 제2003-16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법 제52조·제53조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 하였기,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성 동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서울성동 2003-10호
- 업종 : 일반(전기)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주)케이에이치이엔지
- 대표자 : 김건수
- 주민등록번호 : 461207-*****
- 영업소재지 : 성동구 홍익동 185
- 등록일자 : 2003. 6.18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03-22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행정처분

소방법 제65조의4 동법 제65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97조[별표16] 제2호 바목 (10)(다) 규정에 의거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 상호 : (주)건창기술단
- 영업소재지 : 동대문구 제기동 1158-40
- 대표자 : 정명진 외1
- 주민등록번호 : 420109-*****
- 등록의 종류
 - 소방시설설계 2급 기계
 - 공사감리업 전기
-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서울 동대문 2000-3호(2000. 4.25)
- 행정처분 종류 및 기간 : 영업정지 3월 2003. 7. 3~2003. 9.30
- 사유 : 소방시설 감리 및 감리결과 보고 소홀
- 적용법규 : 소방법 제65조의 4 동법 제 65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97조[별표16] 제2호 바목(10)(다)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03-6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법 제52·53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 서울영등포 2003-3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주) 부영
- 대표자 : 이중근, 이남형, 이희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 등록일자 : 2003. 6.23

◎서초소방서공고 제2003-23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

소방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 초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서울 서초 2003-1호
- 업종(분야) : 소방시설관리유지업
- 상호 : (주)한진에스케이
- 법인등록번호 : 110111-1144453
- 대표자 : 최경립
- 주민등록번호 : 430613-*****
-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12
- 등록일자 : 2003. 6. 23.

◎서초소방서공고 제2003-24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 초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서울 서초 2003-6호
- 업종(분야)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상호 : 우보전기(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1825590
- 대표자 : 신원석
- 주민등록번호 : 520528-*****
-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58-22
- 등록일자 : 2003. 6.23.

◎송파소방서공고 제2003-39호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영업정지1월)

소방법 제53조·제58조제1항 및 소방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송 파 소 방 서 장

- 상호 : (주)상아산업개발
- 영업소재지 : 송파구 문정동 11-12번지
- 대표자 : 박세준 이돈모
- 업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등록번호 : 제서울송파 1999-10호
- 등록일자 : 1999. 8.13
- 행정처분사유 : 변경신고태만(대표자기술인력) (1년간 같은 위반행위)
- 처분의종류 및 시정기한 : 영업정지 1월 (2003. 6.30 ~2003. 7.29)
- 적용법조
소방법시행규칙제97조[별표16]제2호마목6(마) 및 제97조[별표16]제1호 다

◎강동소방서공고 제2003-6호

소방시설공사업(영업정지)

소방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 [별표16] 제2호마목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61조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강 동 소 방 서 장

- 업체명 : (주)불꽃
- 영업소재지 : 강동구 성내동 557-4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김재운
(511224-*****)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등록번호 : 제서울강동 98-137 호
- 등록일자 : 98.10. 2
- 행정처분사유 : 1년내 같은 위반행위 2 회(기술인력미달 및 변경신고태만)
- 행정처분 종류및기간 : 영업정지 3월(2003. 6. 27 ~2003. 9. 26)
- 적용법조항 : 소방법제53조·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 [별표16] 제2호마 목(1), (6)(마) 및 제1호다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21호

하천점용승인

하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78
 - 성명 :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490-6번지
 - 면적 : 4,987.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공원 이용 활성화
 - 개요 : 소형고압블럭포장 1,354.8㎡, 마사토포장 3,524.5㎡, 지압보도포장 108.0㎡, 연식의자(H450×W400) 21.6m, 등의자(L1,800×W650) 9개소, 자전거보관대(L2,350) 3개소, 볼라드(H400×D400) 13개소, 게이트볼장(27,000×22,000) 1개소, 배드민턴장(18,000×9,000) 2개소, 다리 펴기(150×550) 2개소, 링메달리기(900×650×2,500) 1개소, 역기운동기(2,000×1,450) 1개소, 철봉(L3,600×H2,400) 2개소, 평행봉(L2,400×H,1700) 1개소, 허리돌리기(L1,500×H1,500) 2개소, 평상(2,000×2,000) 3개소
5. 점용기간 : 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22호

하천점용승인

하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2-1
 - 성명 : 경인지방환경청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168-8번지, 강서구 염창동 221-2번지
 - 면적 : 1.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하천수질현황판 설치
 - 개요 : 현황판(1.0×0.8) 2EA
5. 점용기간 : 5년